

기업집단현황공시 업무 매뉴얼 (소속회사용)

2025. 4. 21.

공정거래위원회 공 시 점 검 과

- ***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본문 내용 중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전 매뉴얼(2024. 5.) 이후 변경된 내용입니다 ***
- ☞ 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정책·제도/정책자료/경제력집중억제)에서 다운로드 가능

주요 개정내용

<항목 내용 삭제>

- ☞ (목차) **6.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中 **6**1, **7**1, **22**1, **29**1
- □ 임원현황(작성양식 ⑥)
 - 이 임원현황 내용 중 '소속위원회'항목 삭제
- □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등 운영현황(작성양식 ①)
 -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중'법령상 설치의무' 및 '설치목적 및 권한' 항목 삭제
- □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작성양식 図)
 - ㅇ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중 '거래금액의 총액'항목 삭제
- □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작성양식 四)
 - o 공시항목 「다. 이행보증·납세보증 등」 관련
 - '채무금액잔액' 항목 삭제 🖙 공시 희망할 경우 각주에 기재
 -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한 보증 관련 내용 삭제
- □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작성양식 29)
 - 공시항목 「최근 3개년도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매입 내역」 에서 '업종'과 '대표품목'항목 삭제

<항목 내용 추가>

☞ (목차) 6.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中 델

- □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작성양식 ⑭)
 - ㅇ 일반 차입 건과 한도 약정에 따른 차입* 건에 대한 공시양식 분리
 - * <작성양식 14> 나. 한도 약정에 따른 차입원회에 별도 작성

<항목 내용 변경>

☞ (목차) **6.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中 ⑪, ⑩, ⑫, ❷

- □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작성양식 III)
 - ㅇ 개별 거래 건을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는 조건 확대*
 - 거래상대방과의 총 거래금액의 1% 미만에 해당하거나 <u>또는</u> 거래 금액의 규모가 50억 원 미만인 경우
 - * 계열회사간 물류 · IT서비스 거래 현황도 동일 조건 적용
- □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작성양식 図)
 - ㅇ 용역료 수취회사만 공시
- □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작성양식 図)
 - ㅇ 임대료 수취회사만 공시
- □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작성양식 四)
 - ㅇ 상표권 보유회사만 공시

목 차

1.	도입 배경	001
2.	제도의 개요	002
3.	법적 근거	004
4.	주요 용어 설명	005
5.	적용대상 회사 및 책임	800
6.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011
7.	공시절차	123
8.	수탁기관의 업무	127
9.	위반시 제재	128
		400
*	기업집단현황공시 체크리스트	129

도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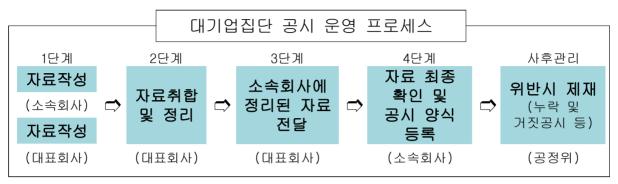
- □ 사전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이해 관계인에 의한 시장감시장치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개정 2009.3월, 시행 2009.7월)
 - 기업 스스로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고, 공개에 대한 책임을 부담
 (사전규제, 직접규제 ⇒ 사후규제, 간접규제)

<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시 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소속회사')가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분기별·연1회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 ☞ 과거에는 구공정거래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 공시대상이었으나, 2017년 3분기 공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변경
- ※ 참고로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개정(2020.12.29.)에 의해 해당 기업집 단에 속한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국내 총생산액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에 해당됨
- * 현황공시 외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2000.4월)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2005.4월)도 운영

1.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운영 현황



- * 소속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에 해당 되는 자료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공시할 의무가 있는 회사
- * 대표회사 : 해당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들을 대표하는 회사로서 소속회사들의 공시 항목별 현황자료를 취합·공시하고, 일부 소속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을 대신 작성하여 공시할 책임이 있는 회사 → 기업집단 스스로 대표회사를 선정 하여 공정위에 신청·확인을 받음

□ (공시자료 작성) 소속회사(원칙) + 대표회사(예외)

O 각 소속회사들의 개별 정보로 구성되는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은 소속회사가 공시자료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

□ (공시내용 취합) 대표회사

○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대표회사가 기업집단 전체 공시사항을 최종 취합하여 공시

□ (공시주체) 소속회사

- O 대표회사는 소속회사(대표회사 포함)들로 부터 공시항목별 내용을 취합하여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공시
- 소속회사는 기업집단 전체 현황 중 자기회사 관련사항만 공시 하고, 기업집단 전체현황은 대표회사 공시를 참조할 것을 기재 (참조공시 방법: 매뉴얼 후단 '참조공시 연결 작업순서' 참고)

※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이 경우 대표회사는 제외된 해당 소속회사의 일반현황 (① "회사의 개요"~ ⑤ "계열회사 변동 현황")에 해당하는 5개 항목을 작성하고, 주석에 해당 회사의 상황(예: 청산절차 진행 중)을 간략하게 기재]

2.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

- □ (공시빈도) 공시항목별로 정보의 변경빈도·활용도, 기업의 작성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기별 또는 연1회 공시
 - O (분기별공시) 계열회사간 채무보증현황·순환출자 변동 내역,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 거래내역 등
 - (연1회공시)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거래현황·유가증권거래 현황·기타자산 거래 현황,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계열회사간 물류·IT서비스 거래 현황,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계열회사간 채권·채무 잔액 현황,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등
- □ (공시시기) 분기별 공시사항은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연1회 공시사항은 매년 5월 31일(연공시 및 1/4분기 공시기한)까지 공시
 - * 다만,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함
- ☐ (공시방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
 - O 공시양식에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 공시양식을 삭제 하고(혹은 양식 안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는 등 공란으로 두지 말 것(미공시에 해당할 수 있음)
 - O 공시양식의 특정 칸 또는 줄에 기재할 사항이 없으면 "-"으로 기재

- O 공시대상 회사가 12월 말 결산 법인이 아닌 경우, 회사의 결산일에 맞춰 공시내용 조정 가능
 - ※ [에시] 11월말 결산 법인인 경우 1/4분기 공시(5월31일)는 12월부터 2월말까지 결산한 내용을 공시
 - ※ [주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 시간은 07:30 ~ 19:00이나, 18:00 이후에 제출할 경우 다음 업무 일에 공시한 것으로 처리됨(☞ 공시기한 마지막 날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 18:00를 넘기지 않을 것)

3 법적 근거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8조 제1항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일반 현황, 주식소유 현황,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현황, 채무보증 현황, 의결권 행사 여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 공시할 의무가 있는 회사, 공시사항 및 공시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
 - O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 O 공시의 방법, 절차 또는 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O 위반행위별 과태료 산정기준 및 가중 감경사유 등을 규정

1. 동일인

□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총수) 또는 법인

2. 동일인관련자

- □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 2022. 12. 27.)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
 - O 동일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Rightarrow $\mathbf{\overline{\lambda}}$ 족
 - *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만 해당.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없음
 - 혈족은 「민법」 제768조에 따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 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
 - 인척은 「민법」 제769조에 따른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동일인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는 해당, 동일인 자녀의 배우자 부모(사돈)는 미해당]
 - 동일인과 아래의 관계에 있는 자 ⇒ 기타친족
 -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 동일인이「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O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출연자이거나 또는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O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다만, 동일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 가능
-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계열회사)
- O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계열회사의 사용인
 -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대표이사, 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을 말함
 -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의미

3. 기업집단

- □ 동일인이(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집단
 - * 동일인 등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이거나 임원 등을 통해 회사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등
 -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 2이상의 회사,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 회사 외 1이상 회사

4. 공시대상기업집단

- □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

6. 계열회사

- ☐ 2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함
 - * 국내 계열회사 또는 국외 계열회사 등 범위에 한정이 없는 경우, 계열회사라고 하면 일반 적으로 국내 및 국외 계열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7. 소속회사(속하는 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로서 기업집단현황공시 등 (비상장공시, 대규모내부거래공시) 공시자료를 작성하여 공시할 의무가 있는 회사들을 말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당연 포함)로서 공시의무 외에 상호출자, 채무보증, 의결권 제한 등의 추가 규제 대상
- 이하, 본 기업집단현황공시 업무 매뉴얼에서 '소속회사'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국내회사)를 의미하고,
 - '계열회사'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계열회사 + 국외 계열회사를 의미함

8. 대표회사

■ 해당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들 중 그 기업집단 및 소속회사들을 대표하는 회사로서 소속회사들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소속회사들이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을 대신 작성하여 공시할 책임이 있는 회사(기업집단 스스로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공정위에 신청·확인을 받음)

- 9. 최대주주(혹은 최다출자자)
- □ 개별 소속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 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함
 - O 최대주주 해당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때 동일인 뿐만 아니라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의 수를 합산하여야 함

5 적용대상 회사 및 책임

1. 공시의무 적용대상 (공시주체)

-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소속회사).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 *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은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 선임결의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휴업 중'은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를 말함
 - ** 공시주체에는 공시집단의 소속회사만 해당되나, 공시할 내용(객체)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만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님. 국외계열사, 임원, 친족 등은 소속회사는 아니지만 공시내용에 포함되는 경우 다수

2. 연도 중 공시집단 소속회사로 편입 또는 제외되는 경우

- □ 공시대상 여부는 편입통지일, 계열제외 통지일을 기준으로 판단
- □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또는 계열 편입된 회사는 최초로 도래하는 공시일부터 공시의무 발생

[참고] 연도중 공시집단 계열편입(혹은 신규지정)된 회사들의 공시작성 기준

□ 공시의무 발생시점

* 기준 : (연공시) 연공시일(5.31) 이전 편입되거나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연공시부터, 6월1일 이후 편입·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공시부터 (분기공시) 편입된 날 또는 지정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공시일부터 의무발생.

편입 - 지정일	분기공시	연공시
1월 - 2월 - 3월	1/4분기 공시(5.31) 부터	금년도 연공시(5.31)부터
4월 - 5월	2/4분기 공시(8.31) 부터	금년도 연공시(5.31)부터
6월	2/4분기 공시(8.31) 부터	다음년도 연공시 부터
7월 - 8월 - 9월	3/4분기 공시(11.30)부터	다음년도 연공시 부터
10월 - 11월 - 12월	4/4분기 공시(2.28) 부터	다음년도 연공시 부터

* 분기 기재 방식 : 11.1에 계열편입된 회사는 4/4분기 공시를 할 때,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작성시 11.1 ~ 12.31이 아니라 10.1 ~ 12.31로 작성

② 연도중 신규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연공시 작성 방법

- ① 회사개요, 국외 계열회사 현황, 임원현황, 소유지분현황,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현황,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 계열회사 현황 : 금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일 기준으로 공시
- ② 재무현황, 손익현황, 계열회사간 담보제공현황,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 :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공시
- ③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자금·유가증권·기타 자산 거래현황,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비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현황, 계열회사간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거래를 공시
- * 계열회사 변동 현황,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은 작성 불필요
- ☐ 계열 편입된 회사의 경우 계열편입일이 포함된 기간의 거래 내역 전체를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기재
- O 계열편입된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기존 소속회사는 계열편입된 회사와의 거래내역을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기재
- [에시] 3월에 계열편입된 회사(A)의 경우 연공시 및 1/4분기 공시(5.31)부터 공시의무 발생. 또한 계열편입된 회사(A)와 거래한 소속회사(B)의 경우 A와의 1/4분기 거래내역을 '계열 회사와의 거래'에 기재

- ☐ 계열제외된 회사 또는 지정제외된 기업집단은 계열제외 또는 지정제외 통지일로부터 공시의무가 면제
 - 그러나, 계열제외된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소속회사는 계열제외된 회사의 계열 제외일이 포함된 분기(분기공시의 경우) 또는 연도 (연공시인 경우)의 거래내역을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기재
 - [에시] 5월에 계열제외된 회사(A)의 경우 1/4분기 공시(5.31)부터 공시 면제. 다만 계열 제외된 회사(A)와 거래한 소속회사(B)의 경우 A와의 거래 내역을 공시

3. 공시책임

- □ 소속회사는 자기회사의 공시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미공시 등에 따른 책임을 짐
- □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취합·공개하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표회사'와 '소속회사'의 역할을 구분
 - 대표회사는 소속회사들로부터 공시사항을 취합하고, 소속회사들이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기업집단 전체 순환출자 현황 등)에 대한 최종 작성 책임이 있음
 - 각 소속회사들은 대표회사가 기업집단 전체의 진실된 정보를 취합·공시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원하고, 자기회사의 공시 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있음

▍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 주요 공시항목은 (1)일반 현황 (2)임원 및 이사회 현황 (3)주식소유 현황 (4)순환출자 현황 (5)지주회사 현황 (6)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7)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 현황 등 7개 범주로 구분되고 이는 30개 항목으로 세분류 ☞ 항목별로 분기 또는 연1회 공시

< 항목별 공시내용 및 공시빈도 >

공시항목	공시내용	공시빈도
(1) 일반현황	① 회사개요 (단)영위업종 현황) ② 회사 재무현황(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③ 회사 손익현황(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④ 국외 계열회사 현황 ⑤ 계열회사 변동 현황	연1회
(2)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⑥ 임원현황(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등) ⑦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 주주총회 관련제도, 소수주주권 등의 운영현황	연1회
(3) 주식소유현황	⑧ 소유지분현황⑨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연1회 연1회
(4) 순환출자현황	①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현황 ①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	연1회 분기
(5) 지주회사현황	②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계열회사 현황	연1회
(6)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① 금융·보험사의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분기
(7)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현황	(④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⑤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⑥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⑥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⑥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⑥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대역(상장/비상장) (⑥ 계열회사간 물류・IT서비스 거래 현황 (⑥ 계열회사간 물류・IT서비스 거래 현황 (⑥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 (⑥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⑥ 계열회사간 기타자산 거래 현황 (⑥ 계열회사간 기타자산 거래 현황 (⑥ 계열회사간 기타자산 거래 현황 (⑥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잔액 현황 (⑥ 계열회사간	

세부 공시내용

① 회사개요

-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통상 5월 1일, 이하 같음) 기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회사의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업종, 종업원 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등
 - *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 : 공정위가 편입통지를 한 날
 - * 신규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 계열편입일은 공정위가 지정한 날(5.1)이 아니라 회사 설립·지분취득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그 기업집단에 계열편입된 날을 기재

□ 작성방법

- O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기회사에 관한 내용을 성실히 기재
 -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구분(불필요한 칸 삭제)
 - ※ 금년도 지정일 이후에 계열편입된 회사의 경우에도 지정일인 5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 O 각 기업집단의 대표회사는 자기회사를 포함한 기업집단 전체 현황표를 작성하고 합계란을 기재하여야 함
- 단, 자기회사(대표회사)를 전체현황 양식의 최상단·최좌측에 기재하고, 소속회사 공시양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함

☞ 이하 모든 공시사항에 있어서 동일함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속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소속회사의 현황은 대표회사가 작성하여 공시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1>

(금년도 지정일 기준, 단위: 명)

소	-속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업종	종업원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비금	A(1)	2	3	4	5	6	7	8
마 왕 회	В							
사								
그 %	С							
회 사	D							
ŏ	l계 9	-	-	-	-	10	11)	-

< 기재요령 >

- 1. ①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공시하는 회사)명을 기재
- 2. ②에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명 또는 대표집행임원명을 당해연도 지정일(등기 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 단, 대표자가 집행임원인 경우 성명 옆에 "(집행임원)"을 붙임
- 3. ③에는 해당 회사의 설립일을 기재
- 4. ④에는 공정거래법 제31조에 의하여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었음을 통지한 날짜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회사의 경우) 단, 신규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의 경우, 계열편입일은 회사 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그 기업집단과 계열 관계가 성립된 날을 기재[공정위가 지정한날 (5월1일)이 아님]
- 5. ⑤에는 회사의 주력업종(또는 매출액 최다 업종)을 기재. 주력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알파벳과 4자리 숫자 사용)에 따른 코드번호와 주력업종명을 기재 [예시: "F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 6. ⑥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를 기재
 - *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월 급여간이세액(A01)의 총인원
- 7. ⑦에는 공시일 현재 유가증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상장', 공개기업이 아닌 경우 '-'로 표시
- 8. ⑧에는 해당 회사의 결산일자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
- 9.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⑨에는 소속회사(국내계열회사)의 수 합계를, ⑩에는 종업원수의 합계를, ⑪에는 기업집단 내 공개 기업(상장사)의 수를 기재

연위업종 현황

-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기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매출이 존재하는 모든 영위 업종과 영위 업종별 대표 품목(대표사업)을 작성

□ 작성방법

- O 개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또는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작성
- O 영위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대표품목은 영위 업종 중 매출액이 큰 품목을 작성

이해돕기

-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 가능성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제정
-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의 <통계분류(왼쪽 상단에 위치) - 한국표준산업분류 -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 영문자 1개와 숫자 5개로 구성 [예시] A12345

Α	12	3	4	5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 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 영위 업종은 세분류를 주로 사용하며, 영문자와 4번째 숫자까지 표시 [예시 : A1234]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1-1>

(금년도 지정일 기준)

3	·속회사명	영위업종	대표품목(대표사업)
		2	3
미구수취기	A(1)		
비금융회사			
	В		
금융회사	С		
	D		

< 기재요령 >

- 1. ①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명을 기재
- 2. ②에는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또는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매출이 발생된 모든 영위업종을 기재. 영위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 기준
- ③에는 영위업종별 대표품목(제조업) 또는 대표사업(기타업종)을 기재 [예시] (영위업종) 곡물가공품 제조업 → (대표품목) 밀가루 (영위업종) 대형종합소매업 → (대표사업) 대형마트

② 회사 재무현황

-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결산일 6 · 9 · 12월에 속한 경우) 기준
 - 결산일이 3월인 회사는 당해연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다만, 작성 시 가결산 상태인 경우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되 가결산 자료임을 명시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소속회사의 자산(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유동부채, 비유동 부채), 자본(자본금, 자본총계) 및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등

□ 작성방법

- O 개별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
- O 유동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포함한 유동자산 전체금액을 기재하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 '차입금'은 별도 칸에도 기재

☞ 금융보험업 영위 회사의 작성 방법						
유동자산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등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기타자산					
유동부채	예수부채, 차입부채 등					
비유동부채	기타부채					

- 차입금은 재무상태표상 모든 차입금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외화단기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의 유동성장기부채, 외화장기 차입금의 유동성장기부채 등
 - * 차입금계정에 사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채도 합산하여 기재 가능 (즉, 사채가 별도 계정일 경우 합산하지 않음)

O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속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소속회사의 현황은 대표회사가 작성하여 공시

이해돕기

- ™ 재무제표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일정기간동안 기업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회계보고서로서, 회계기간 말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손익계산서, 자본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본변동표,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담고있는 현금흐름표 및 주석 등으로 구성
- ☞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

< 재무상태표 >

과목	당기말	전기말
자산 ㅣ.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
Ⅱ.비유동자산	×××××	×××××
~ 자산총계	×××××	×××××
부채 . 유동부채 ~ . 비유동부채 ~ 부채총계	×××××× ××××××	××××× ×××××× ××××××
자본 ㅣ. 자본금 ~	×××××	×××××
자본총계	×××××	×××××

이해돕기

- ☞ 「유동성장기부채」라?
 - 사채나 장기차입금 등 비유동부채항목 중에서 기말 현재 만기가 1년 이내면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
 - 장기사채 중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면 유동성장기사채, 장기차입금 중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면 유동성장기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 중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면 유동성외화장기차입금 등으로 구분하나, 모두 합쳐서 유동성장기부채로 계상함
- ☞ <재무현황> 양식의 「⑥ 차입금」에 기재될 유동성장기부채는 유동성장기 차입금, 유동성외화장기차입금 등을 의미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2>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소·	속회사명	유동자산 (a)	현금 및 현금성자산	비유동 자산 (b)	자산 총계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부채총계 (c+d)	차입금	자본금	자본 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	현금성자산	(b)	(a+b)	(c)	(d)	, ,	사비교		중계	1 2 3 11)
비 금	A	1	2	3		4	5		6			7
융	В											
회 사	소계											
금	С	1	2	3		4	5		6			
융 회	D											
의 사	소계											
	합계							8			9	10

< 기재요령 >

- ※ 개별 재무상태표 상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작성
- 1. ①에는 유동자산 전체 금액, ③에는 비유동자산 전체 금액을 기재
- 2. ②에는 유동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액을 기재. 단기금융상품 등 기타 과목을 합산하지 않음
- 3. ④에는 유동부채 전체 금액, ⑤에는 비유동부채 전체 금액을 기재
- 4. ⑥에는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해외단기차입금, 해외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의 유동성장기부채, 해외 장기차입금의 유동성장기부채 등 재무제표상 모든 차입금 계정의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사채가 차입금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채도 차입금에 합산하여 기재 가능
- 5. 금융업의 경우 다음의 계정과목의 금액을 기재. ① : 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등, ③ : 유형자산, 기타자산, ④ : 예수부채, 차입부채 등, ⑤ : 기타부채
- 6. ⑦에는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눈 비율을 ○○.○○% 양식으로 기재 (자본잠식인 경우 '자본 잠식'으로 기재)
- 7.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각 란에 합계를 기재하고 ⑩에는 기업집단전체의 부채비율[기업집단 부채총계의 합계(⑧)를 기업집단 자본총계의 합계(⑨)로 나눈 비율]을 기재

③ 회사 손익현황

-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결산일 6 · 9 · 12월에 속한 경우) 기준
 - 결산일이 3월인 회사는 당해연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다만, 작성 시 가결산 상태인 경우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되 가결산 자료임을 명시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공시내용) 회사의 매출액(또는 영업수익), 영업이익, 영업외손익(기타 손익, 금융손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등

□ 작성방법

- O 개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O 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수익+금융수익은 기타수익 등에, 영업외 비용 또는 기타비용+금융비용은 기타비용 등에 기재
 - ⇒ IFRS 도입으로 동일계정과목이 없을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주석으로 표기
- 공시일 이후 재무제표의 변경사항(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 등)이 발생한 경우, 공시일 시점에 적정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공시했다 면 변경 공시할 의무는 없음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속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소속회사의 현황은 대표회사가 작성하여 공시

이해돕기

- ☞ 손익계산서는 크게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금융수익, 금융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주당이익 등으로 구성
- ☞ 손익계산서 쉽게 이해하기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 - 판매비/관리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영업이익 + 기타수익 - 기타비용 + 금융

수익 - 금융비용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법인세비용

< 손익계산서 >

과목	당기말	전기말
l .매출액	×××××	×××××
~ II.매출원가 ~	×××××	×××××
III.매출총이익	×××××	×××××
IV.판매비와 관리비	×××××	×××××
~ V.영업이익	×××××	×××××
VI.기타수익	×××××	×××××
~ WI.기타비용	×××××	×××××
~ Ⅷ.금융수익	×××××	×××××
~ IX.금융비용	×××××	×××××
- ~ X.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XI.법인세비용	×××××	$\times \times \times \times \times$
XII .당기순이익	××××××	×××××
XIII. 주당이익	* * * * *	****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3>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소속회사명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	영업이익	기타수익등	기타비용등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A			1	2	3	
비금융 회사	В						
' '	④소계						
	С						
금융 회사	D						
	⑤소계						
(6합계						

< 기재요령 >

- ※ 개별 재무제표상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작성
- 1. ①에는 손익계산서 상 영업수익 이외의 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수익+금융수익을 기재
- 2. ②에는 손익계산서 상 영업비용 이외의 영업외비용 또는 기타비용+금융비용을 기재
- 3. ③에는 영업외비용 또는 금융비용 등에 포함되는 이자비용을 기재
- 4.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각 항목에 대하여 비금융회사 합계(④) 및 금융회사 합계(⑤)를 기재하고, 총합계를 ⑥에 기재
- ※ IFRS 도입으로 동일 계정과목명이 없을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주석으로 표기

④ 국외 계열회사 현황

-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기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국외계열사의 회사명, 업종, 내부지분율, 소재국, 결산일, 최다출자자, 최다출자자 지분 등

□ 작성방법

- 국외계열사의 최다출자자인 소속회사가 작성·공시
 - 최다출자자가 2개사 이상인 경우 대표 1개사만 작성·공시하여도 무방. 그러나 2개사 모두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공시위반(미공시)에 해당
- 국외계열사 여부는 국내계열사 판단기준과 동일한 기준(30% 이상 최다출자자 혹은 실질 지배력 기준) 적용
- *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집단은 국내법인 중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해 동일인의 최다출자자인 외국에 있는 법인은 이 항목에서 공시해야 하는 국외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음
- O 내부지분율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합산하여 기재
- 국외계열사(A)가 지배하는 국외계열사(B)도 기재하며, 해당 국외계열사(A)의 최다출자자(국내 소속회사 '집')가 공시(다음 예시 <표> 참조)
- 대표회사가 소속회사의 자료를 취합하여 공시할 경우 최다출자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시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속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소속회사의 현황은 대표회사가 작성하여 공시

[예시] 공시의무 회사

국외계열회사명	업종	내부지분율(%)	소재국	결산일	최다출자자	공시의무자 (소속회사)
Α	•••		•••		갑사	갑사
В					A사	갑사
С					을사	을사
D					C사	을사
E					갑사 또는 을사	갑사 또는 을사
•••			_		•••	
합계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4>

(금년도 지정일 기준)

국외계일	국외계열회사명 업		내부지분율(%)	소재국	결산일	최다출자자	최다출자자 지분	
1		2	3	4	5	6	7	
합계	8	-	-	-	_	-		

< 기재요령 >

- 1. ①에는 국외계열사명을 기재
- 2. ②에는 해당 회사의 영위업종을 간략하게 기재 (예: 반도체 판매업, 건설업, 무역업 등)
- 3. ③에는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합산하여 기재
- 4. ④에는 소재국을 간단하게 기재 (예: 미국, 일본, 영국 등)
- 5. ⑤에는 해당 회사의 결산일자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
- 6. ⑥에는 해당 회사의 최다출자자명을 기재
- 7. ⑦에는 ⑥에 기재한 최다출자자의 지분율을 기재
- 8.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⑧에 국외계열사의 총 개수를 기재

⑤ 계열회사 변동 현황

- 【□ (작성기준) 전년도 지정일 다음 날부터 금년도 지정일까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국내 및 국외 계열회사의 계열편입과 계열제외 내역에 대한 계열회사명, 변동사유, 변동일자 등

□ 작성방법

- O '계열편입'은 편입된 소속회사가 직접 작성·공시하고, '계열 제외'는 대표회사가 작성·공시
- 국외계열사 변동내역은 최다출자자(앞 ④ 국외계열회사 현황 참조) 가 작성·공시하며,
 - 최다출자자가 2개사 이상인 경우 대표 1개사만 작성·공시하여도 무방. 그러나 2개사 모두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공시위반(미공시)에 해당
- O 국외계열사의 변동일자는 지분을 취득 또는 매도한 날을 변동 일자로 작성
- O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속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소속회사의 현황은 대표회사가 작성하여 공시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5>

(전년도 지정일 다음 날 ~ 금년도 지정일 기준)

계열회사명	변동사유	변동일자	업종
⑤편입 00개			
1. △△△△ ①	2	3	4
⑤제외 00개			
1. △△△△ ①	2	3	4
⑤순증 00개			

< 기재요령 >

- 1. ①에는 해당 기간 중 편입ㆍ제외된 계열회사(국내+국외)명을 기재
 - 국내회사(편입·제외일자가 빠른 순서) ⇒ 국외회사(편입·제외일자가 빠른 순서) 순서로 기재
- 2. ②에는 변동사유를 간략하게 기재 (예: 편입-회사설립, 지분취득, / 제외-합병, 지분매각, 청산종결, 친족분리, 지정제외, 기타 등)
- 3. ③에는 해당 회사가 공정위로부터 편입·제외일로 통지 받은 날짜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 국외계열사의 변동일자는 지분을 취득한 날 또는 매도한 날을 기재
- 4. ④에는 주력업종(매출최다 업종)을 기재.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알파벳과 4자리 숫자 사용)의 코드번호와 주력업종명을 기재 [예:"F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 5. ⑤에는 대표회사가 해당 기간 내 편입 회사수, 제외 회사수, 순증가(감소)계열사 수를 기재 [예: 2개 증가시 "2개", 2개 감소시 "△2개"로 표시]

6 임원현황 [ESG]

-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기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회사 임원의 성명, 직위(이사회 의장 여부 등), 취임일및 등기일(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동일인과 친족관계 여부,검직사항(타사에서 등기임원인 경우 기재), 주요경력, 중임여부 등

□ 작성방법

- O 소속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임원(이사, 감사, 집행임원 등)에 대하여 작성. 즉, 등본상 등재된 사실이 없는 임원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 '직위'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감사위원도 해당),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이사회 의장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일 경우 해당 내역 추가 기재(※"이사회 내 위원회"는 본 매뉴얼 "⑦ 나.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에서 작성한 위원회를 말함)
- O '주요경력'은 현 직위를 부여받기 직전의 경력(근무처, 직위)을 기재하되, 최근 5년 이내 계열사에서 퇴직한 임·직원인 경우 퇴직한 계열사명과 직위를 '퇴직임직원' 칸에 작성
 -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근무 경력을 기재
- O '중임여부' 관련 임원의 중임 판단기준
 - 임원(직위: 사내이사)이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임)되고 같은 날 같은 직위로 선임된 경우를 중임으로 봄. 한편, 임기 만기일 전에 해임되고, 같은 직위로 선임되는 경우 및 별도의 해임 없이 임기가 만료

되는 시점에 맞춰 같은 직위로 재선임되는 경우도 중임으로 보되, 하단에 각주를 통해 동 내용을 간략히 기재

- 단, 해임(사임)일과 재선임일이 다를 경우, 업무의 지속성에 따라 중임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
- [에시] 사내이사(000)이 23.12.31.사임하고, 24년도 주총 후 사내이사로 24.4.1.에 재선임 되었을 경우, 3개월 간 사내이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면, 중임으로 가주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6>

(금년도 지정일 기준)

소속회사명		임원명	직위	취임일	등기일	임기 만료 (예정)일	동일인과 친족관계	겸직 사항	주요 경력	퇴직 임직원	중임 여부
비금융회사	A	1	2	3	4	5	6	7	8	9	10
	В										
금융회사											

< 기재요령 >

- 1. ①에는 소속회사의 등기된 임원의 성명(任員名)을 기재
- 2. ②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위원), 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겸직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근거하여 각각 칸을 나누어 기재. 만약, 이사회 의장 및 이사회 내 위원회("① 나.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에 기재한 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괄호안에 표기(취임일 및 등기일 작성 불요)
 - ** (예) ㅇㅇㅇ:대표이사(이사회 의장), □□□: 사내이사(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 3. ③의 "취임일"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이 취임한 날짜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 중임된 경우는 최초 취임일을 기재
- 4. ④의 "등기일"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이 등재된 날짜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 중임된 경우는 최초 등기일을 기재
- 5. ⑤의 "임기만료(예정)일"은 임기만료일이 명확할 경우 날짜만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하고 특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일 기준 예정일을 기재하되 하단에 각주로 설명 표기. 다만 임기만료(예정)일이 주총 종결시인 경우 올해 주총일을 기준으로 임기만료(예정)일 기재
 - * (예1) 2024.1.1.선임한 이사(△△△)의 임기 만료(예정)일: 2026.12.31.(각주 설명 ▶ 3년 임기종결시), (예2) 2024.1.1.선임한 이사(ㅇㅇㅇ)의 임기 만료(예정)일: (올해 주총이 3.20.에 진행되었을 경우,) 2027.3.20.(각주 설명 ▶ 주총 종결시)
- 6. ⑥에는 동일인과 친족관계(배우자, 혈족 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및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혈족○촌', '인척○촌', '기타친족' 등으로 기재하고,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는 '-'로 표시
- 7. ⑦에는 해당 임원이 다른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을 기재하고, 다른 회사가 계열사인 경우 ○○○(계열), 비계열회사인 경우 △△△으로 기재. 한편, 국외에서 다른 회사 및 계열회사의 이사에 준하는 직위나 임원으로 겸직하는 경우에도 기재
- 8. ⑧에는 현 직위를 부여받기 직전의 경력(근무지명, <u>직위</u>)을 기재.
 - * (예) 해당직위(예,이사,과장,OO대학교수,OO고문 등)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여부와 상관없이 기재
- 9. ⑨에는 최근 5년 이내 국내·국외 계열사에서 퇴직한 임·직원의 경력(계열사명, <u>직위</u>)을 기재
 - * (예) 해당 직위(예,이사,팀장,주임 등)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기재
- 10. ⑩에는 해당 임원의 중임 여부에 따라 신임, 중임으로 구분하여 기재

②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제도 등의 운영현황, 소수주주권 행사내용 [ESG]

가. 이사회 운영 현황

- □ (작성기준) 전년도 지정일 다음 날부터 금년도 지정일 까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이사회의 구성원명, 이사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회의에 참석·불참한 사외이사 수, 의안에 반대한 사외이사 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일 경우 그 공시일 등

□ 작성방법

- O「이사회구성원명」은 개최일 기준 구성원명을 기재, 감사는 불포함
 - 이사회 구성원 중 불참자가 있더라도 구성원명에는 포함하여 기재
- O「의안내용」은 의결사항별로 작성하고, 각 의결사항별 가결·부결 여부 등 기재
- ○「사외이사」참석·불참·반대 칸을 기재할 경우 사외이사 만을 의미하며, 기타비상무이사 등은 포함되지 않음
- O 「대규모내부거래공시일」은 의결사항이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 공시일을 기재

나.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 □ (작성기준) 전년도 지정일 다음 날부터 금년도 지정일 까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이사회내 위원회의 명칭, 구성원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회의에 참석·불참한 사외이사 수, 의안에 반대한 사외 이사 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일 경우 그 공시일 등

□ 작성방법

-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에 한하여 기재
 - * [예시]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 O 위원회가 해당기간 중 설치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회의 개최 여부에 상관없이 포함하여 기재
- O「의안내용」은 의결사항 별로 작성하고, 각 의결사항 별 가결· 부결 여부 등 기재
- ○「사외이사」참석·불참·반대 칸을 기재할 경우 사외이사 만을 의미하며, 기타비상무이사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대규모내부거래공시일」은 의결사항이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 공시일을 기재

이해돕기

- ☞ 「상법」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 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⑤ 제386조제1항·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회사의 정관을 통해 이사회 설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도 이사회 설치 및 운영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다. 기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제도 운영현황

- □ (작성기준) 전년도 지정일 다음 날부터 금년도 지정일 까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상법상 서면투표제(제368조의3) 및 전자투표제(제368조의4), 집중투표제(제382조의2) 등의 도입여부 및 제도운영사례, 서면 투표제 및 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 비율 등

□ 작성방법

- O「도입여부 판단기준」및「제도운영사례여부 판단기준」에 따라 각 제도의 도입여부를 "O", "X" 로 기재하고, 실제 제도운영사례가 있는 경우 ()안에 "O(실시)"라고 표기 후, 의결권 행사 비율 기재
 - * [에시] 도입 및 실제 운영사례가 있는 경우 : "ㅇ(실시)" 도입 후 실제 운영사례가 없는 경우 : "ㅇ"으로만 표시

[주의사항]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도입된 제도가 없는 경우 '×'로 공시할 것.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하지 말 것

- O 「도입여부 판단기준」(금년도 지정일 기준)
 - 집중투표제 : 정관에 배제규정이 없는 경우 도입(상법 제382조의2)
 - 서면투표제 : 정관에 도입하기로 한 경우 도입(상법 제368조의3)
 - 전자투표제 :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도입하기로 한 경우 도입(상법 제368조의4)
 - [주의사항] 집중투표제는 상법에 의하여 모든 회사가 도입의무화. 다만, 정관에 배제 규정이 있는 경우 도입하지 않음. 따라서 회사의 정관에 배제 규정이 없다면 "○"로 표시. 실제 제도운영사례까지 있다면 "○(실시)"로 표시
 - ☞ 집중투표제란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 즉, < 의결권 = 보유주식수 × 이사후보수 >
- 「**제도운영사례여부 판단기준**」(전년도 지정일 다음날~금년도 지정일)
 - 전년도 지정일 다음 날부터 금년도 지정일까지 기간 중 주주 총회에서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행사 사례가 있던 경우에만 운영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해돕기

- ☞ 「집중투표제」도입여부 관련하여 정관의 배제규정 확인하기
 - 집중투표제는 상법 제382조의2의 규정에 의해 모든 법인이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둘 수 있어, 공시 전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예시 1] 집중투표제를 배제한 경우

제 4 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 25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이 회사는 이사는 5명, 감사는 1명으로 한다.

제 26 조 (선임방법)

- 1.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2.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2 인 이상의 이사 선임시 상법 제 382 조의 2 에 의한 집중투표의 방법 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다.

[예시 2]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경우

제 25 조의 2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회사가 통지한 총회소집통지서에 첨부한 서면 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의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돕기

☞ 상법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법 제382조의2 (집중투표)

-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 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 ⑥ 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라. 소수주주권 행사내용

- □ (작성기준) 전년도 지정일 다음 날부터 금년도 지정일 까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행사자, 소수주주권 내용, 행사 사유 등

- O 소수주주권이란 경영진에 의해 회사의 손실이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될 경우 소수주주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제기권'
 -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장부열람권'
 - 서면으로 청구한 총회의 소집 요구가 거절되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 이사나 감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이 가능한데 다수의 전횡에 의해 해임 청구가 부결되면 법원에 해임 청구할 수 있는 '이사 해임청구권'
 -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이사 행위 유지 청구가 가능한 '이사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등

<작성양식 7>

가. 이사회 운영 현황

(전년도 지정일 다음 날 ~ 금년도 지정일 기준)

1 人 元	-1) 17-1	이사회	이사회	ما ما ما م	키거시 H		사외이사		대규모
소속회	리 사 명	구성원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참석	불참	반대	내부거래 공시일
		1)	2	3	4)	5	6	7	8
비금융 회사	A								
	В								
	С								
금융 회사									
	D								

- 1. ①에는 ②에 기재한 이사회 개최일 기준 이사회 구성원명(構成員名)을 기재하고, 구성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기재한 다음 주석으로 구성원명*을 모두 기재 * 위원회 구성원 중 불참자가 있더라도 구성원명에는 포함되어야 함
- 2. ②에는 이사회 개최 일자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
- 3. ③에는 의결사항 별로 기재 (보고사항 등 의결을 하지 않는 건은 제외)
- 4. ④에는 의결사항 별로 가결여부를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보류', '부결' 등으로 표시
- 5. ⑤에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사외이사 수, ⑥에는 불참한 사외이사 수를 기재하고, ⑦에는 해당 의안에 반대한 사외이사 수를 기재(사외이사 만을 의미, 기타 비상무이사 등은 불포함)
- 6. ⑧에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인 경우 최초 공시 날짜를 연월일 형식 (0000.00.00)으로 기재

나.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 운영 현황

(전년도 지정일 다음 날 ~ 금년도 지정일 기준)

	노란 기대	이이원과	그 뭐이ল	ᅰᆌᄼᆡᆌ	ماماءيا ٥	리거시 H		사외이시	-	대규모
公e	녹회사명	위원회명	구성원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안내용 가결여부		불참	반대	내부거래 공시일
		1	2	3	4	5	6	7	8	9
비그	A		4							
비금융회사	A									
사										
	В									
기미양	С									
금융회사	D									

- 1. ①에는 위원회명(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기재하되, 실제 위원회가 해당 기간 중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기재
- 2. ②에는 ③의 개최일자 기준 해당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명(構成員名) 전체를 기재하고, 구성원이다수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기재한 다음 주석으로 구성원명*을 모두 기재 * 위원회 구성원 중 불참자가 있더라도 구성원명에는 포함되어야 함
- 3. ③~⑧은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기재
- 4. ⑨에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인 경우 최초 공시 날짜를 연월일 형식 (0000.00.00)으로 기재

다. 기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제도 운영현황

(전년도 지정일 다음 날 ~ 금년도 지정일 기준)

			서면트		전자	투표제	
	소속회사명	집중투표제	도입 및 실시여부	일반 주주 의결권 행사비율	도입 및 실시여부	일반 주주 의결권 행사비율	비고
비	A	1	2	3	4	5	6
금융회사	В						
사	⑦소계						-
금	С						
금융회사	D						
사	⑦소계						-
	⑧합계						-

* 일반주주란 총수일가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주주(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를 뜻함

- 1. ①,②,④에는 다음 "도입여부 판단기준" 및 "제도운영사례여부 판단기준"에 따라 각 제도의 도입여부를 O, X로 기재하고, 제도운영사례가 있는 경우 "O"표시 옆에 "(실시)"를 붙여서 표기
 - 예시) 도입 및 운영사례가 있는 경우 : "O(실시)", 도입하였으나 운영사례가 없는 경우 : "O", 도입하지 않은 경우 : "X "(해당없음 이라고 기재하지 말 것)
 - ◆ 도입여부 판단기준(금년도 지정일 기준)
 - 집중투표제 : 정관에 배제규정이 없는 경우 도입(상법 제382조의2) 정관 반드시 확인
 - 서면투표제 : 정관에 도입하기로 규정한 경우 도입(상법 제368조의3)
 - 전자투표제 :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도입하기로 한 경우 도입(상법 제368조의4)
 - ◆ 제도운영사례여부 판단기준(전년도 지정일 다음 날 ~ 금년도 지정일 까지) : 주주총회에서 집중· 서면·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행사가 발생한 경우 "(실시)"라고 기재
- 2. ③,⑤에는 ②,④에 실시로 작성한 경우에만 다음 "일반주주 의결권 행사비율 산정방식"에 따라 각 제도를 통한 의결권 행사비율을 00.00% 양식으로 기재
 - ◆ 일반주주 의결권 행사비율 산정방식
 - 제도별 의결권 행사비율 = ⓐ(각 제도를 통해 의결권 행사한 주식수 중 총수일가 및 특수관계인 행사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의결권 행사한 주식 총수)*100
 - A: 총수일가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일반 주주(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소액 주주 등)가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통해 의결권 행사한 주식수
 - ®: 총수일가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전체 주주가 의결권 행사한 주식수

<예 시> A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의결권 행사 현황이 아래와 같을 경우 공시 방식

	구 분	총수일가 및 특수관계인	일반주주	계
	! 있는 주식총수	50	50	100
의결권	! 행사한 주식 총수	50	5	55
	직접투표	45	2	47
	서면투표	5	1	6
	전자투표	0	2	2

- * A회사의 일반주주 의결권행사비율(서면투표제): 1 / 55 * 100 = 1.82% 일반주주 의결권행사비율(전자투표제): 2/ 55 * 100 = 3.64%
- ** (참고) 주주총회가 여러번일 경우 및 안건별로 의결권있는 주식 총수가 다른 경우 등을 고려하여 정기 주주총회의 1호 안건을 기준으로 일반주주 의결권 행사비율 작성
- 3. ⑥에는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의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상법의 일반원칙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항을 간단하게 기재
- 4.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⑦, ⑧에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 및 실시한 비금융 계열회사, 금융 계열회사, 전체 계열회사의 수를 각각 "도입건수(운영사례건수)"로 기재 예시) 집중투표제를 10개사가 도입하고 2개사에 제도운영사례가 있는 경우: "10 (2)"로 기재

라. 소수주주권 행사내용

(전년도 지정일 다음 날 ~ 금년도 지정일 기준)

	소속회사명	행사자	소수주주권 내용	행사 사유
則	A	①	2	3
TE 아이	В			
사	④소계		_	_
급	С			
금 융 회 사	D			
사	⑤소계		=	_
	⑥합계		ı	-

- 1. ①에는 소수주주권 행사자 명을 기재한다. 다수인 경우 ○○○ 외 △명으로 기재 후, 주석으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자들의 이름을 기재 가능
- 2. ②에는 소수주주권 내용을 기재(예시 : 대표소송제기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해임청구권, 회계 장부열람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등)
- 3. ③에는 행사사유를 기재 (예시 : 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 4.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④, ⑤, ⑥에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비금융 계열회사, 금융 계열회사, 전체 계열회사의 수를 각각 기재.

8 소유지분현황 [ESG]

-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기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소속회사의 소유지분현황(주주현황)을 기업집단의 동일인측과 기타주주로 구분하여 보통주·우선주의 주식수와 지분율 등을 기재

□ 작성방법

- (동일인측 범주) 동일인, 배우자/혈족1촌, 혈족 2~4촌, 인척 3촌 이내, 기타친족*, 비영리법인, 등기된 임원(자기회사, 국내·외계열회사, 비영리법인의 등기임원), 자기주식, 계열회사 등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 ※ [주의사항] 계열회사에 국외계열사도 포함됨을 주의
- O (기타주주 범주) 동일인측이 아닌 최다출자자, 기타

양식 작성 돕기

☞ 동일인측이 최다주주인 경우

- (1) 동일인측 보유주식을 각 칸에 작성하고, '자기주식'이 동일인측에 포함된다는 것에 주의
- (2) 동일인측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기타주주(⑫번 칸)에 기재
- ☞ 동일인측과 '홍길동(혹은 홍길동 주식회사)'이 공동 최다주주이거나 홍길동(혹은 홍길동 주식회사)'이 최다주주인 경우
- (1) 동일인측 보유주식을 각 칸에 작성하고, '자기주식'이 동일인측에 포함된다는 것에 주의
- (2) 홍길동(혹은 홍길동 주식회사)의 지분을 ⑪번 칸에 성명과 주식수를 기재
- (3) 기타 소액주주의 지분에 대해 ⑫번 칸에 기재

<작성양식 8>

(금년도 지정일 기준, 단위: 주, %)

, 스윙:	, l 111		この	이 키 이 - 키 - 키	2-l 11-l	보통	통주	우석	선주	합	·계
소속회	778		농일	인과의 관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동일인	1	2	3	4	(5)	6	7
				배우자/							
				혈족1촌							
			친	혈족2~4촌							
			족	인척 3촌 이내							
		동		⑧ 기타친족							
固		일		⑨ 친족 합계	><						
금	A	인 측		비영리법인							
융 회	A	,		등기된 임원							
				자기주식							
사				계열회사							
				(국내+국외)							
				타 동일인관련자							
				① 동일인측 합계	$\geq \leq$						
		기타	,	동일인측이 아닌	11						
		주주		최다주주		10					
				<u>기타</u> 총 계	\iff	12 13	100%	13	100%	13	100%
	В			<u> </u>		(D)	100%	19)	100%	(9)	100%
금융	С			•••							
	D			•••							
회사	$\perp \nu$										

- ※ 주식의 명칭, 종류와 관계없이 보통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의미
- 1. ①의 '동일인'이란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자연인 또는 법인)
- 2. ②(④)와 ③(⑤)에는 동일인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에 대한 보통주(우선주) 주식수와 지분율 [동일인 보유 보통(우선)주식수를 A회사 발행 총 보통(우선)주식수로 나눈 비율]을 기재(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이하 같음)
- 3. ⑥에는 ②와 ④의 합계를, ⑦에는 A회사 발행 총 주식수(보통주+우선주)에 따른 지분율을 기재.
- 4. ⑧의 '기타친쪽'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 5. ⑨에는 A회사에 대한 친족(배우자/혈족1촌, 혈족2~4촌, 인척 3촌 이내 및 기타친족) 보유 주식수 및 지분율 합계를 각각 기재
- 6. ⑩에는 동일인측[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등기된 임원, 자기주식, 계열회사(국내+국외), 기타 동일인 관련자] 보통주·우선주의 주식수와 지분율 합계를 각각 기재
- 7. ①에는 동일인측이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최다출자자)명을 기재하고 해당 주주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의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A회사에 대해 동일인측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측'란에 동일인측 주식수와 지분율을, 최다출자자는 '기타주주-동일인 측이 아닌 최다출자자'란에 보통주·우선주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
- 8. ②에는 A회사 주주 중 ⑩과 ⑪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식수 합계와 지분율 합계를 각각 기재(동일인측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⑪을 제외한 기타 주주 전체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의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
- 9. ⑬에는 A회사의 총 발행 주식수를 기재

⑨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ESG]

-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기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소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지정일 기준 장부가액, 주식수, 지분율을 계열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

- 보통주, 우선주, 합계(=보통주+우선주)로 구분하여 기재
- O「장부가액」란에는 금년도 지정일 기준 장부가액을 기재
 - 금년도 지정일 기준 장부가액이 없거나 평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일 기준 가장 최근(직전 분기말·반기말·사업연도말) 장부가액 내지 검토보고서 기준으로 기재. 다만, 공시정보 이용자가 이 같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주석 등의 방법으로 표시
 - * 지분율에 변동이 있거나 배당금을 받은 사유 등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액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정일 기준 장부가액에 미반영한 경우 등
- O 자기주식도 다른 주식과 동일하게 보통주, 우선주로 구분하여 주식수, 지분비율 및 장부가액을 기재

<작성양식 9>

(금년도 지정일 기준, 단위 : 주, %, 백만원)

			출자회사				비금융	회사						금융	·회사		
			_(소속회사)	P	A	I	3		•	소	.계	(2			소	계
피출	자회시	}				주식수	지분율										
			장부가액			C	D										
	비	Δ	보통주			2	3										
	급	Α	우선주			4	5										
	융		합계														
계	회	В				6											
게 열	사																
회		장부	-가액 소계			7											
사	금	С															
	융	D															
	회																
	사	장부	나가액 소계			7											
		ह	l계			8											

- ※ 출자회사가 공시. 개별 재무제표 기준
- ※ 주식의 명칭, 종류와 관계없이 보통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의미
- 1. ①에는 B사(출자회사, 공시주체)가 보유한 A회사 발행주식의 장부가액(금년도 지정일 기준)을 기재
- 2. ②(④)에는 B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회사 보통주식수(우선주식수)를 기재하고, ③(⑤)에는 그 지분율을 기재 [여기서 지분율은 B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회사 보통주식수(우선주식수)를 A회사의 총 발행 보통주식수(우선주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함]
- 3. ⑥에는 B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보통주, 우선주로 구분하여 주식수, 지분율, 장부가액을 기재
- 4. ⑦과 ⑧에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장부가액 각각의 합계와 전체 장부가액의 합계를 기재

10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ESG]

-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기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계열회사 간 1주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화출자 현황

<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제도 >

- □ **순환출자의 개념** : 3개 이상의 계열사간 출자가 고리와 같이 상호 연결된 환상형 출자구조를 의미(공정거래법 제2조 제16호)
- □ **주요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새로운 순환출자 형성 및 기존의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출자)를 금지(공정거래법 제22조 제1항)
- 다만 아래의 사유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 ~ 3년의 해소유예기간을 부여(공정거래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 기업의 사업구조개편(합병·분할, 영업전부의 양수 등)
- 정당한 권리행사(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수령 등)
-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자율협약 절차개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 의결 및 총수일가의 재산출연 또는 기존 주주인 계열회사의 유상증자 참여)

- (1) 소속회사
- O 소속회사는 순환출자고리에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순환출자 현황을 소속회사용 양식에 공시
- 자신이 속해 있는 순환출자고리에 대하여 자신을 해당 순환출자 고리의 시작과 끝으로 기재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도 국내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공시에 대한 의무가 있음

- 순환출자고리 내에서 자신이 출자한 현황은 지분율, 주식수, 장부가액을 모두 표시하고, 순환출자고리 내 다른 회사간의 출자현황에 대해서는 화살표로만 표시
 - 「지분율」에는 자사주를 포함한 총발행주식수(보통주+우선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율을 기재
 - 「주식수」에는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회사 주식을 보통주, 우선주, 합계로 구분하여 기재
 - 「장부가액」에는 당해연도 지정일 기준 출자지분에 대한 장부 가액을 기재

(2) 대표회사

- O 대표회사는 대표회사용 순환출자현황 양식을 공시해야 함
- O 대표회사는 기업집단내 존재하는 모든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 하여야 하고, 소속회사별로 중복되는 순환출자는 통합하여 공시
- 순환출자 고리의 시작과 끝을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순환출자 고리내 총수일가 지분 보유사가 없으면 자산총액이 가장 큰 회사)로 작성
- O 각 회사별 출자현황에는 자사주를 포함한 총발행주식수를 기준 으로 계산한 지분율을 기재

<작성양식 10>

<소속회사용>

(금년도 지정일 기준, ★: 상장사, ●: 금융보험사, 단위: %, 주, 백만원)

순번	회사1	회사2	회사3	회사4	회사5	
1	① ★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В →	★ •C →	★A		
	⑤ • 출자시점 및 유형:					
2	→ 지분율	В →	★ •C →	●D →	★A	
	∘ 출자시점 및 유형:					
:						

< 기재요령 >

- ※ 주식의 명칭, 종류와 관계없이 보통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의미
- ※ 소속회사 A는 기업집단 대표회사 및 소속회사와 협조하여 자신이 포함된 순환출자고리를 확인하여 모두 공시하고, 순환출자고리 내 자신의 출자현황은 지분율, 주식수, 장부가액을 기재하고, 순환 출자고리 내 다른 회사의 출자현황은 화살표로만 표시
- 1. ①의 회사명에는 공시주체인 해당 회사를 기재하고 순환출자고리의 끝에도 동일하게 기재
- 2. 순환출자고리의 배열 순서는 회사2에 위치하는 회사명의 가나다 순으로 공시(회사2에 위치하는 회사명이 동일한 경우 회사3의 회사명의 가나다 순으로 공시, 이하 동일)
- 3. ②에는 자사주를 포함한 총발행주식수(보통주+우선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율을 기재(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이하 같음)
- 4. ③에는 소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회사 주식을 보통주, 우선주, 합계로 구분하여 기재
- 5. ④에는 당해연도 지정일 기준 출자 지분에 대한 장부가액을 기재
- 6. ⑤에는 가장 최근 출자한 시점(또는 변동된 시점) 및 순환출자 형성 사유(유상증자/합병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0000.00.00 A사가 ~ 사유로 B사 유상증자 참여(신주취득)

<대표회사용>

순번		호	[사1				회사2				회사3				회사4		호 .	사5	
			\rightarrow				\rightarrow				\rightarrow								
		(2)지분	·율			지분	율			지분	율							
1	① ★A	주트	보통주	3	В	주	보통주		★ •C	 주	보통주		★A						
	~^	식	우선주	4		식	우선주			식	우선주								
		수	합계	(5)		수	합계			수	합계								
			\rightarrow				\rightarrow				\rightarrow				\rightarrow				
			지분	율			지분	율			지분	율			지분율	울			
2	★A	주	보통주		В	주	보통주		*	주	보통주		•D	주	보통주		★ A		
		식	우선주			식	우선주		•C	식	우선주			식	우선주		,,,,		
		수	합계			수	합계			수	합계			수	합계				
÷																			

(금년도 지정일 기준, ★: 상장사, ●: 금융보험사, 단위: %, 주, 백만원)

- ※ 주식의 명칭, 종류와 관계없이 보통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의미
- ※ 대표회사는 기업집단 내에 존재하는 모든 순환출자고리를 공시하고, 소속회사별로 중복되는 순환출자고리는 통합하여 공시
- 1. ①의 회사명에는 순환출자고리 내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총수일가 지분 보유회사가 없으면 자산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기재하고 순환출자고리의 끝에도 동일하게 기재
- 2. 전체 순환출자고리의 배열 순서는 회사1에 위치하는 회사명의 가나다 순으로 공시(회사1에 위치하는 회사명이 동일한 경우 회사2의 회사명의 가나다 순으로 공시, 이하 동일)
- 3. ②에는 자사주를 포함한 피출자회사의 총발행주식수(보통주+우선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율을 기재(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이하 같음)
- 4. ③, ④, ⑤에는 소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회사 주식을 보통주, 우선주, 합계(보통주+ 우선주)를 기재

①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 내역[ESG]

- 【→ (공시기한)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5월·8월·11월말일) 이내
- □ (공시내용)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순환출자현황및 변동내역

□ 작성방법

(1) 소속회사

- O 소속회사의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 지분율 및 보유주식 수를 작성하여 당기 및 전기로 구분하여 공시
- O 순환출자 변동내역의 세부 사항은 "세부 변동내역"에 별도로 작성
 - 순환출자 형성(소멸), 순환출자 고리 내 지분율 증가(감소) 등의 변동 발생 사유, 취득(처분)가액, 변동시점 등을 기재

(2) 대표회사

- O 대표회사는 대표회사용 전체 순환출자현황 양식(당기, 전기)을 공시해야 하고, 대표회사용 양식 작성 시에는 소속회사 별로 중복되는 순환출자 고리는 통합하여 공시
 - 순환출자 고리의 시작과 끝을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순환출자 고리 내 총수일가 지분 보유사가 없으면 자산총액이 가장 큰 회사)로 하여 작성
- O 회사간 출자현황에는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율 및 주식수를 작성
 - * 해당 분기동안 순환출자 변동 내역이 없더라도, 다음의 작성양식들 중 <당기 순환 출자 현황> 및 <전기 순환출자 현황>에 따라 그 현황을 기재하고, <세부 변동내역 (전기대비)>에는 "변동사항 없음"을 작성

<작성양식 11>

<소속회사용>

< 당기 순환출자 현황 >

(당기말 기준, ★: 상장사, ●: 금융보험사, 단위: %, 주, 백만원)

순번		회人	⊹ 1		হ	사2		사3		사4		사5	
1	① ★ A	보 우 현	→ 지분 월 통주 선주 합계 장부가	345	В	\rightarrow	★●C	\rightarrow	★A				
2	★A	보 우 현	→ 지분율 통주 선주 합계 밝부기만		В	\rightarrow	★●C	\rightarrow	•D	\rightarrow	★A		
기타									1			1	

< 전기 순환출자 현황 >

(전기말 기준, ★: 상장사, ●: 금융보험사, 단위: %, 주, 백만원)

순번			회사1		3	회사2	호	사3	호	사4	회	사5	
	①★		→ ②지분 보통주	율									
1	A	주 식	우선주	4)	В	\rightarrow	★● C	\rightarrow	★A				
		수	합계	5									
			⑥장부기	액									
			\rightarrow										
			지분원	<u> </u>									
		주	보통주										
2	★A	식	우선주		В	\rightarrow	★● C	\rightarrow	●D	\rightarrow	★A		
		수	합계										
			장부가	ᅫ									
기타													

< 기재요령 >

- ※ 주식의 명칭, 종류와 관계없이 보통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의미
- ※ 소속회사 A는 기업집단 대표회사 및 소속회사와 협조하여 자신이 포함된 순환출자고리를 확인하여 모두 공시하고, 순환출자고리 내 자신의 출자현황은 지분율, 주식수, 장부가액을 기재하고, 순환 출자고리 내 다른 회사의 출자현황은 화살표로만 표시
- ※ 최근 2개 분기분을 당기, 전기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2025. 5월에 공시하는 경우 당기는 2025. 1월~2025. 3월 말 기준, 전기는 2024. 10월~2024. 12월 말 기준

- ※ '기타'는 해당분기동안 신규형성 또는 강화되었으나, 같은 분기내에 해소된 경우에 작성하고, 순번 제일 아래쪽에 기재
- 1. ①의 회사명에는 공시주체인 해당 회사를 기재하고 순환출자고리의 끝에도 동일하게 기재
- 2. 순환출자고리의 배열 순서는 회사2에 위치하는 회사명의 가나다 순으로 공시(회사2에 위치하는 회사명이 동일한 경우 회사3의 회사명의 가나다 순으로 공시, 이하 동일)
- 3. ②에는 자사주를 포함한 총발행주식수(=보통주+우선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율을 기재(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이하 같음)
- 4. ③~⑤에는 소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회사 주식을 보통주, 우선주, 합계로 구분하여 기재
- 5. ⑥에는 해당분기말 기준 출자 지분에 대한 장부가액을 기재

<세부 변동내역(전기대비)>

(단위: 백만원)

순번	구분	변동사유	취득(처분) 가액	변동시점	유예기간
1	①	2	3	4	(5)
2					
3					
기타					

< 기재요령 >

- ※ 11번 양식의 순환출자 변동내역의 세부 변동내역을 작성(상기 순환출자 변동내역에 표시한 순 환출자고리의 순번에 따라 기재)
- ※ '기타'는 해당분기동안 신규형성 또는 강화되었으나, 같은 분기내에 해소된 경우에 작성하고, 순번 제일 아래쪽에 기재
- 1. ①에는 순환출자 형성·소멸, 지분율 증가·감소, 보유주식 수 증가·감소(지분율 변동없이 보유주식 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등을 기재
- 2. ②에는 순환출자 형성·소멸, 지분율 증감 등의 사유를 기재하고, 순환출자 형성, 지분율 증가, 보유주식수 증가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단서 각 호(1~5호) 해당여부를 괄호안에 기재
 - [예시] B사를 흡수합병하여 신규순환출자고리 생성(0%→10%) (법 1호) C사 지분을 매각하여 지분율 감소(10%→5%)
- 3. ③에는 취득시에는 취득가액을, 처분시에는 처분가액을 기재
- 4. ④에는 순환출자 변동이 발생한 시점을 기재 [예시] 지분 취득·매각의 경우 주권교부일 또는 주금납입일, 합병·분할 등의 경우 등기일 등
- 5. ⑤에는 순환출자 형성·지분율 증가가 공정거래법 제22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각 호에 부여된 유예기간을 기재하고 해당되는 각호를 괄호안에 기재

[예시] 2014.8.20.~2015.2.19.(법 1호)

<대표회사용>

< 당기 순환출자 현황 >

(당기말 기준, ★: 상장사, ●: 금융보험사, 단위: %, 주, 백만원)

순번			회사1				회사2				회사3				회사4		회.	사5	
			\rightarrow				\rightarrow				\rightarrow								
		②지분율		②지분율		지분율				지분	율								
1	① ★ A	주	보통주	3	В	주	보통주		★ •C	주	보통주		★A						
		식	우선주	4		식수	우선주			식	우선주								
		수	합계	(5)		_	합계			수	합계								
			\rightarrow				\rightarrow				\rightarrow				\rightarrow				
			지분원	ІЩО			지분	율			지분	율			지분율	울			
2	★A		보통주		В	_	보통주		*	_	보통주		•D	_	보통주] ★A		
		주직수	우선주			주식수	우선주		●C	주식수	우선주			 주 식 수	우선주				
			합계				합계				합계				합계				
:																			

< 전기 순환출자 현황 >

(전기말 기준, ★: 상장사, ●: 금융보험사, 단위: %, 주, 백만원)

순번			회사1				회사2				<u>-, ^</u> 회사3	<u> </u>			회사4		호 회·	사5	
			\rightarrow			→				\rightarrow									
		②지분율		지분율				지분	 율										
1	① ★A	주	보통주	3	В	주	보통주		★	주	보통주		★A						
		식	우선주	4		식	우선주			식	우선주								
		수	합계	(5)		수	합계			Ť	합계								
			\rightarrow				\rightarrow				\rightarrow				\rightarrow				
			지분을	<u></u>			지분	율			지분	율			지분을	<u> </u>			
2	★A	_	보통주		В	_	보통주		*	_	보통주		•D	_	보통주		★A		
		주식수	우선주			주 식 수	우선주		●C	주식수	우선주			 주 식 수	우선주				
		_	합계				합계			T	합계				합계				
:																·			

- ※ 주식의 명칭, 종류와 관계없이 보통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의미
- ※ 대표회사는 기업집단 내 모든 순환출자고리를 공시하고 소속회사별로 중복되는 순환출자고리는 통합하여 공시
- ※ 최근 2개 분기분을 당기, 전기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2025.5월에 공시하는 경우 당기는 2025.1월~2025.3월 말 기준, 전기는 2024.10월~2024.12월 말 기준
- 1. ①의 회사명에는 순환출자고리 내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총수일가 지분 보유회사가 없으면 자산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기재하고 순환출자고리의 끝에도 동일하게 기재
- 2. 전체 순환출자고리의 배열 순서는 회사1에 위치하는 회사명의 가나다 순으로 공시(회사1에 위치하는 회사명이 동일한 경우 회사2의 회사명의 가나다 순으로 공시, 이하 동일)
- 3. ②에는 자사주를 포함한 총발행주식수(=보통주+우선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율을 기재(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 4. ③~⑤에는 소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회사 주식을 보통주, 우선주, 합계로 구분하여 기재

12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 계열회사 현황[ESG]

- □ (작성기준) 금년도 지정일 기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되지 않고, 체제밖에 별도로 존재하는 국내계열회사 및 그 주주현황*
 - * 단, <작성양식 12>의 주주현황 중 계열회사는 국내+국외 계열사를 의미

□ 작성방법

○ 공시주체 :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지주 회사 체제 내 계열회사들의 자산총액이 해당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금융·보험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함)의 50% 이상인 기업집단의 대표회사

(☞ 소속회사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음)

- *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집단이라도 대표회사는 해당 공시양식 <표>안에(혹은 공시양식표를 삭제한 자리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할 것
- O「주식수」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및 의결권 없는 주식 (우선주)을 합산한 총 주식수를 기재
 - 「지분율」에도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 (=보통주+우선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율을 기재
- O 주주현황 중 「계열회사」에는 국내 계열회사뿐만 아니라 국외 계열회사까지 포함하여 기재
- O 「합계」에는 해당 기업집단의 전체 국내계열회사 수 및 지주회사 체제 내 국내계열회사의 수,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계열회사의 수를 기재

<작성양식 12>

(금년도 지정일 기준, 단위: 주, %)

							주주	현황					
	-체제밖 열회사	동일인		친족		계열회사 (국내+국외)		기타 동일인관련자		자기주식		합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비그	Α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급 융 :	В												
회 사	•••												
금	С												
급 쓩 회	D												
사	•••												
합 계	13)	※ 국	※ 국내 계열회사 수 : 개사 (지주회사 체제 내 국내계열회사 수 : 개사) ⑭										

- ※ 주식수 및 지분율은 주식의 명칭, 종류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총수(보통주 등 의결권 있는 주식 및 우선주 등 의결권 없는 주식을 합산)를 의미. 대표회사가 공시.
- 1. ①과②에는 국내계열회사 중 지주회사 체제밖 A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보통주, 우선주 합산) 중 동일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및 지분율[동일인 보유 주식수를 A회사 발행 총 주식수로 나눈비율]을 기재
 -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이하 같음)
- 2. ③과④에는 동일인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및 기타친족) 보유 주식수 및 지분율 합계를 각각 기재
- 3. ⑤와⑥에는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국외계열사 포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및 지분율합계를 기재
- 4. ⑦과⑧에는 동일인 관련자(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 중 친족 및 계열회사를 제외한 동일인관련자(등기임원, 비영리법인 등)의 주식수 및 지분율 합계를 기재
- 5. ⑨와⑩에는 A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주식수 및 지분율 합계를 기재
- 6. ⑪은 ①,③,⑤,⑦,⑨ 주식수의 합계. ⑫는 A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⑪이 차지하는 비율
- 7. ③에는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계열회사 수를 기재
- 8. ⑭에는 해당 기업집단의 전체 국내계열회사 수 및 지주회사 체제 내 국내계열회사 수 기재

13 금융·보험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ESG]

- □ (작성기준)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 (공시기한)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5월⋅8월⋅11월말일) 이내
- ☐ (공시내용)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현황 및 의결권 행사 여부

<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

- □ 관련 규정(공정거래법 제25조)
 - (기본원칙)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은 '통계법'제22조(표준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함
 - (예외)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 피출자회사도 금융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를 말함
 -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등에 의한 승인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제2호)
 - 피출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피출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제3호) 이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 나. 정관 변경
 -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단, 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

- O 공시주체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소속회사 및 기업 집단의 대표회사
 - * 금융보험사를 보유하지 않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대표회사는 해당 공시양식 표안에(혹은 공시양식표를 삭제한 자리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할 것(소속회사는 제외)
 -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의결권행사 현황에 대하여 공시는 해야함에 주의
- 피출자자에 해당하는 국내 계열회사가 금융·보험사에 해당하는 경우(출자회사 및 피출자회사가 모두 금융보험사인 경우)에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
- O 「주식수」 및 「지분율」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을 제외한 주식수 및 지분율을 기재
- 피출자회사 주주총회 안건에는 대상기간 내 상정된 모든 안건을 기재하고, 금융보험사가 그중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을 괄호안에 함께 기재
- O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집단 내 금융보험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피출자 계열회사 수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수의 합계를 기재

<작성양식 13>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주, %)

	피출	자회사	현황		출자현황			의결권행사 현황	
소속 회사명	회사명	상장 여부	전체 주식수	주식수	승인 주식수	지분율	주총일	안건	의결권 행사 여부
								9	10
	2	3	4	(5)	6	<u></u>	8		
1									
합계	11)	_	_	_	_	_	_	_	12

- ※ 대표회사 및 소속회사가 공시.
- 1. ①에는 해당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회사명을 기재
- 2. ②에는 금융·보험사(①)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금융·보험사는 제외한다) 회사명을 기재, ③에는 상장여부를 기재(상장회사의 경우 "상장", 비상장회사의 경우 "-"로 표시)
- 3. ④에는 피출자회사(②)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를 기재
- 4. ⑤에는 금융·보험사(①)가 소유하고 있는 피출자회사(②)의 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를 기재하고, ⑥에는 ⑤의 주식수 중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등에 의한 중인을 얻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 제2호)를 기재
- 5. ⑦의 지분율에는 피출자회사의 전체 주식수 중 해당 금융·보험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 [⑤의 주식수를 ④의 전체 주식수로 나는 비율을 기재(분기 종료일 기준).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 6. ⑧에는 피출자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을 기재하고, ⑨에는 주주총회 안건을 모두 기재 * 해당 기간동안 개최실적이 없는 경우 "개최실적 없음"이라고 기재
- 7. ⑩에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 또는 '×'로 기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우측 괄호 안에 의결권행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제25조상 근거를 기재
 - □ 예시 : ○(제25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 제3호 가) 공정거래법 외 ⇒ ○(*****법 00조 00항 00호)
- 8.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①에는 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피출자 계열회사 (②) 수의 합계를 기재하고, ②에는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수의 합계를 기재

14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 □ (공시기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회사의 결산일이 6·9·12월에 속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속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
 - 결산일이 3월인 회사는 당해연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다만, 작성 시 가결산 상태인 경우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되 가결산 자료임을 명시
 - [에시] 결산일이 12월인 법인은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직전연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3월인 법인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소속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동안 계열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O 직전 사업연도 동안 차입한 금액을 분기별로 구분하여 발생 금액 기준으로 작성
- 해당 분기 동안 차입한 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였어도 상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총 차입금액을 기재하며, 만기 연장된 금액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된 금액만을 기재
 - [에시] ① ××××년 2/4분기에 국내계열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차입한 후 같은 분기 동안 30억 원을 상환하였더라도 100억 원으로 기재(70억원 아님)
 - ② 이전 분기에 30억원 차입한 후 직전 분기에 연장한 경우 30억원을 기재. 단, 이때 10억원은 상환하고 20억원만 연장하였다면 20억원을 기재

- 은행 등과 여신한도 약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예_당좌차월, 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차입 등)는 해당 분기말 실제 잔액(채무 잔액)을 기재 ► <작성양식 14>의 나. 한도 약정에 따른 차입에 작성
- O 리스거래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회계처리한 경우 '차입' 으로 보아 공시대상
- 정수기, 복사기 등 소액 렌탈거래의 경우 자금거래현황에서 제외 가능 (소액 렌탈거래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소액거래를 포함한 분기별 리스부채 발생금액(증가금액) 전체를 자금거래로 공시하여도 무방함)
- (공시대상에 제외되는 차입금) ①사채·기업어음 등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②가수금, ③제품·원자재 등 수입에 따른 외화단기차입금 중 유산스(Usance), ④콜차입·만기 7일 이내 증권 금융 차입, ⑤매출채권 매각 거래로 인해 발생한 단기 차입금 등

이해돕기

- ☞ **가수금** : 현금을 받았으나 계정과목,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부채계정
- ☞ 유산스: 환어음의 지급기간. 어음의 지급방법에는 제시와 더불어 즉시 지급되는 일람출급어음과 지급일이 지급약속을 표명한 후 일정기간 지급이 유예되는 기한부어음이 있음. 기한부 어음은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무역대금 결제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식

<작성양식 14>

가. 일반 차입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대여자					Ä	'내계열호	사				
`		거래		비금원) 회사			금융회사			3 2 2 3	÷ »
차입회사 (소속회사)		기간	A	В		소계	С		소계	합계	기타합계	총계
		1/4										
		2/4										
	A	3/4										
固		4/4										
		소계	_			-			_			
급융		1/4	1			3			4	5	6	
회	_	2/4	1									
사	В	3/4	1									7
		4/4	1									
		소계	2									
	소계		8									
	31.71	1/4	0									
		2/4										
급용회	С	3/4										
융		4/4										
		소계										
사												
	소계		9									
	합계		10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차입한 회사(소속회사)가 공시
- 1. ①에는 B사(차입한 회사, 공시주체)가 A사로부터 해당 분기 동안 차입한 금액을 기재
- 2. ②에는 B사가 A사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동안 차입한 금액을 기재
- 3. ③와 ④에는 B사가 비금융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분기별 합계와 금융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분기별 합계를 각각 기재
- 4. ⑤에는 B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합계(③+④)를 기재 (단, ⑤합계는 감사보고서 상 장부가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5. ⑥에는 국내 계열사를 제외한 자(금융기관, 타법인, 국외계열사 등)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합계 (⑦-⑤)를 기재
- 6. ⑦에는 전체 차입 금액의 총계를 기재
- 7. 대표회사는 ⑧⑨⑩에 모든 계열회사가 A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비금융사', '금융사' 및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나. 한도 약정에 따른 차입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대여자					ā	T내계열회				
		거래		비급원) 위회사			금융회사			기미취 제
차입회사 (소속회사)		기간	A	В		소계	С		소계	합계	기타합계
		1/4									
	A	2/4									
固	A	3/4									
급		4/4									
융	В	1/4	1			2			3	4	5
회		2/4	1								
사	Б	3/4	1								
		4/4	1								
	• •										
금		1/4									
융	С	2/4									
) 회	C	3/4									
사		4/4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차입한 회사(소속회사)가 공시
- 1. ①에는 B사(차입한 회사, 공시 주체)가 A사로부터 한도 약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 각 분기말 실제 잔액(채무 잔액)을 기재
- 2. ②와 ③에는 B사가 비금융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해당 분기말 실제 잔액의 합계와 금융 계열 회사로부터 차입한 해당 분기말 실제 잔액의 합계를 각각 기재
- 3. ④에는 B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해당 분기말 실제 잔액의 합계(②+③)를 기재
- 4. ⑤에는 국내 계열회사를 제외한 자(금융기관, 타법인, 국외계열사 등)로부터 한도 약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 각 분기말 실제 잔액(채무 잔액)을 기재

匝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 □ (공시기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회사의 결산일이 6·9·12월에 속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속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
 - 결산일이 3월인 회사는 당해연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다만, 작성 시 가결산 상태인 경우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되 가결산 자료임을 명시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소속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동안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금액

- O 직전 사업연도 동안 대여한 금액을 분기별로 구분하여 발생 금액 기준으로 작성
 - 해당 분기 동안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라도 상환 받은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총 대여금액을 기재하며, 만기 연장된 경우에는 만기 연장된 금액만을 기재
 - [예시] ① ××××년 2/4분기에 동일인 등에게 10억원을 대여한 후 같은 분기동안 5억원을 상환받았더라도 10억원으로 기재
 - ② 이전 분기에 10억원 대역한 후 직전 분기에 연장한 경우 10억원을 기재. 단, 이때 5억원은 상환받고 5억원만 연장하였다면 5억원을 기재
- 친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친족(배우자, 혈족4촌 이내, 인척3촌 이내 및 기타친족)을 의미. 다만, 해당 양식에서는 친족에 속하는 배우자, 혈족1촌은 동일인과 같은 칸에 기재하므로 주의

-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임원 등을 의미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

<작성양식 15>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관계						
]		거래	동일인, 배우자,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	합계
대여	회사	기간	혈족1촌	신 두	급전	- 미정덕됩킨 중 -	합세
(소4	투회사)						
		1/4	1	3	4	5	6
	A	2/4	1				
		3/4	1				
刊		4/4	1				
		소계	2				
급용회	В	1/4					
회		2/4					
사		3/4					
		4/4					
		소계					
	• •						
	소계		7				
		1/4					
금		2/4					
11 % 회	С	3/4					
		4/4 소계					
사		오세					
	소계		8				
	합계		9				
	ріп		9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 1. ①에는 A사(소속회사)가 동일인, 배우자 및 혈족1촌에게 대여한 금액을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재
- 2. ②에는 A사가 동일인, 배우자 및 혈족1촌에게 직전 사업연도 동안 대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3. ③에는 A사가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친족 (배우자, 혈족4촌 이내, 인척3촌 이내 및 기타친족)을 의미하되, 배우자 및 혈족1촌 제외]에게 대여한 금액을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재
- 4. ④에는 A사가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임원 등을 의미]에게 대여한 금액을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재
- 5. ⑤에는 A사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에게 대여한 금액을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재
- 6. ⑥에는 A사가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금액의 분기별 합계(①+③+④+⑤)를 기재
- 7.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⑦⑧⑨에 모든 계열회사가 동일인, 배우자, 혈족1촌에게 대여한 금액의 합계액을 '비금융사', '금융사' 및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16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 □ (공시기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회사의 결산일이 6·9·12월에 속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속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
 - 결산일이 3월인 회사는 당해연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다만, 작성 시 가결산 상태인 경우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되 가결산 자료임을 명시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소속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동안 국내 계열회사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의 매도가액(장부에 기재된 유가증권 매도금액)

- 직전 사업연도 동안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의 매도가액을 분기별로 구분하여 작성
- O 유가증권은 주식,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 3개월 미만 채권 등도 포함), 수익증권인 펀드, 기업어음(CP) 등 거래대상이 되는 증권을 의미
 - * 수익증권의 환매, 채권이나 CP 매입 후 상환 등은 공시대상이 아님
- O 소속회사가 자신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국내계열회사에게 주고 돈(또는 현물 등)을 받은 경우 공시대상
 - 즉, 매도에는 매각 뿐 아니라 제공, 발행 등도 포함된 개념으로 유상증자, 교환 등을 통해 유가증권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무상 증자는 돈 등을 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공시대상 아님)

- * (에시) A가 B를 흡수합병하면서 B의 주주인 C(계열회사)가 B의 주주에서 A의 주주가 된 경우 A와 C 모두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을 작성하여야 함
- 소속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돈(또는 현물 등)을 받고 유가증권이 감소되는 유상감자가 공시대상. 무상감자는 돈 등을 받지 않고 감소되는 것으로 공시대상에서 제외
- O A사가 금융회사를 통해 B사에게 유가증권을 매도한 경우

① 금융회사가 단순중개하고, A사와 B사가 계열	A사가 B사에게 매도한
관계인 경우	내역을 공시
② 금융회사가 A사의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A사와	A사는 금융회사에게 매도한
금융회사가 계열관계인 경우	내역을 공시
③ 금융회사가 A사의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이를 B사가 매입한 경우로서, 금융회사와 매입자 B사가 계열관계인 경우	금융회사가 B사에게 매도한 내역을 공시

- ※ 금융회사는 계열관계인 A, B사와의 유가증권거래로 인해 벌어들인 중개수수료를 계열사간 상품·용역 거래 현황(공시양식 15, 16번)에 기재
- (기재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7일 이내 기업어음

<작성양식16>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매입회사					계	열회사			
`		거래		비금융	융회사			금융회사		
	회사 (후회사)	기간	A	В		소계	С		소계	합계
		1/4								
	A	2/4								
		3/4								
비		4/4 소계								
금융	В	<u>조세</u> 1/4	1			3			4	5
융		2/4	①			<u> </u>			4)	3
회		3/4	1							
사		4/4	1							
		소계	2							
	소계		6							
		1/4								
ュ		2/4								
유	C	3/4								
금 융 회		4/4								
사		소계								
	• •									
	소계 합계		<u> </u>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매도회사가 공시
- 1. ①에는 B사(유가증권을 매도한 소속회사, 공시주체)가 A사에게 유가증권을 매도한 금액을 분기 별로 합산하여 기재
- 2. ②에는 B사가 A사에게 직전 사업연도 동안 유가증권을 매도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3. ③과 ④에는 B사가 비금융 계열회사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의 분기별 합계와 금융 계열회사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의 분기별 합계를 각각 기재
- 4. ⑤에는 B사가 국내 계열회사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의 분기별 합계(③+④)를 기재
- 5.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⑥⑦⑧에 모든 계열회사가 A사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의합계액을 '비금융사', '금융사' 및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17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 □ (공시기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회사의 결산일이 6·9·12월에 속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속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
 - 결산일이 3월인 회사는 당해연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다만, 작성 시 가결산 상태인 경우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되 가결산 자료임을 명시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소속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동안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계열회사 제외)와 거래한 유가증권의 매도·매입금액(장부에 기재된 유가증권 매도·매입금액) 및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임원에 한함)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하여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내역

- O 유가증권은 주식,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 3개월 미만 채권 등도 포함), 수익증권인 펀드, 기업어음(CP) 등 거래대상이 되는 증권을 의미
 - * 수익증권의 환매, 채권이나 CP 매입 후 상환 등은 공시대상이 아님
 - * 스톡옵션은 자사의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유가증권 거래에 해당
- 친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친족(배우자, 혈족4촌 이내, 인척3촌 이내 및 기타친족)을 의미

- * 다만, <작성양식 17> "가. 유가증권 매도거래", "나. 유가증권 매입거래"에는 친족에 속하는 배우자, 혈족 1촌은 동일인과 같은 퀸에 기재하므로 주의
-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임원 등을 의미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
- (매도·매입 내역) 직전 사업연도 동안 소속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제외)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도·매입한 유가증권의 매도·매입금액을 <작성양식 17>의 <u>가. 유가증권</u> 매도거래, 나. 유가증권 매입거래에 분기별로 구분하여 작성
 - * 스톡옵션의 경우 권리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가. 유가증권 매도거래 내역에 공시
-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소속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친족·임원에 한함)에게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내역을 <작성양식 17>의 <u>다. 주식지급 거래 약정 내역</u>에 작성
 - 성과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Stock Grant), 양도제한조건부주식* (Restricted Stock, RS) 지급약정 등 약정의 명칭과 관계없이 임직원에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함
 - *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관련 약정으로는 ①약정 체결 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이 귀속되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Restricted Stock Unit, RSU), ②약정과 동시에 주식이 귀속되나 일정 조건 충족 시까지 주식양도권이 제한되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estricted Stock Awards, RSA) 약정 등이 있음
 - 다만, 주식지급약정 유형 중 실제 주식지급 없이 현금만 지급 되는 약정*은 공시대상에서 제외

- * 예시: 가상주식(Phantom Stock), SARs(Stock Appreciation Rights) 등 가상의 주식을 부여하고 일정 시점 이후 그 부여 수량의 주식 가치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약정
- ※ 보상부여 방식으로 주식교부와 현금보상이 혼합되어 있는 약정^{*}은 내용 전체를 공시
 - * 예시: RSU를 부여하면서 가득기간 도과 후 50%는 주식, 50%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약정
-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체결된 주식지급 거래 약정에 대하여 해당 약정의 내용을 공시
- <u>다.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u>에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되, 약정취소 조건이나 부여 주식수의 변동 가능성, 그 외 주식지급에 관한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타 주요 약정내용' 항목에 기재
 - * 기재할 내용이 많으면 표 하단에 각주로 기재 가능
- 소속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임원)에게 자신의 주식이 아닌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지급 계약을 체결한 소속회사가 해당 약정내용을 공시
 - * '부여 주식의 종류'에 지급하는 주식의 발행회사와 주식 종류를 기재 (예: 00사 보통주)
- 주식지급 거래 약정상 가득(지급)조건을 충족하여 직전 사업연도 에 실제 주식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거래상대방에 지급된 주식 금액을 <작성양식 17>의 가. 유가증권 매도거래에 공시하여야 함
 - * 주식 지급 시점의 주가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할 것
 - * 가득조건의 미충족으로 기존에 약정한 주식 중 일부(또는 전부)가 미지급된 경우 필요시 해당 내용을 각주로 기재 가능

<작성양식 17>

가. 유가증권 매도거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관계 회사	거래 기간	동일인, 배우자, 혈족1촌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	합계
(소4	후회사)						
		1/4	1	3	4	5	6
		2/4	1				
	Α [3/4	1				
,ul		4/4	1				
비그		소계	2				
금융회	В	1/4					
ਨੀ		2/4					
사		3/4					
' '		4/4					
		소계					
	소계		7				
		1/4					
		2/4					
급 융 회	С [3/4					
히		4/4					
사		소계					
'							
	소계		8				
	합계		9				

나. 유가증권 매입거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관계 회사 - 회사)	거래 기간	동일인, 배우자, 혈족1촌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	합계
		1/4	1)	3	4)	5	6
		2/4	1				
	A	3/4	①				
비		4/4	①				
		소계	2				
급 융 회	В	1/4					
회		2/4					
사		3/4					
		4/4					
		소계					
	• •		<u> </u>				
	소계	4 / 4	7				
		1/4					
금		2/4					
규 쓩 회	С	3/4					
		4/4 ১ না					
사		소계					
	소계		8				
	<u> </u>		9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 1. ①에는 A사가 동일인, 배우자 및 혈족1촌과 유가증권을 매도(매입)한 금액[장부에 기재된 유가증권 매도(매입) 금액]을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재
- 2. ②에는 A사가 동일인, 배우자 및 혈족1촌과 직전 사업연도 동안 유가증권을 매도(매입)한 금액 [장부에 기재된 유가증권 매도(매입) 금액]을 기재
- 3. ③에는 A사가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친족 (배우자, 혈족4촌 이내, 인척3촌 이내 및 기타친족)을 의미하되, 배우자 및 혈족1촌 제외]과 유가 증권을 매도(매입)한 금액[장부에 기재된 유가증권 매도(매입) 금액]을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재
- 4. ④에는 A사가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임원 등을 의미]과 유가증권을 매도(매입)한 금액[장부에 기재된 유가증권 매도(매입)금액]을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재
- 5. ⑤에는 A사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과 유가증권을 매도(매입)한 금액[장부에 기재된 유가증권 매도(매입) 금액]을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재
- 6. ⑥에는 A사가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매도(매입)한 유가증권 금액의 분기별 합계액(①+ ③+④+⑤)을 기재
- 7.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⑦⑧⑨에 모든 계열회사가 동일인, 배우자, 혈족1촌에게 매도하거나 이들로 부터 매입한 유가증권 금액의 합계액을 '비금융사', '금융사' 및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다. 주식지급 거래 약정 내역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주)

지급회 (소속호	4	거래 상대방	관계	부여일	유형 (명칭)	부여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 수	가득 (지급) 조건	지급 시기	기타 주요 약정내용
		000	1	2	3	4	5	6	7	8
			1							
	A									
	-									
刊										
금융 회사										
의 사	В									
금융	C									
회사										

- 1. ①에는 해당 약정의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인(동일인, 친족, 임원)의 동일인과의 관계를 기재(동일 인이나 친족이 임원인 경우에도 동일인 또는 친족으로 기재). 친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친족(배우자, 혈족4촌 이내, 인척3촌 이내 및 기타친족)을 의미하며, ①에는 배우자, 혈족O촌, 인척O촌, 기타 친족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임원은 동일인 또는 친족을 제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임원 등을 의미
- 2. ②에는 A사가 동일인, 친족, 임원 등에게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등 부여 일 기재
- 3. ③에는 A사가 동일인, 친족, 임원 등에게 부여하기로 한 주식기준보상의 유형을 기재(예: 양도제한조 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등)
- 4. ④에는 A사가 동일인, 친족, 임원 등에게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를 기재 (예시: 'A사 보통주', '계열사 B사 보통주')
- 5. ⑤에는 A사가 동일인, 친족, 임원 등에게 부여하기로 약정한 주식의 수를 기재
- 6. ⑥에는 실제 주식 지급에 필요한 요건을 기재(예시: '부여일로부터 O년 근속' 등) - 별도의 제한 없이 부여 즉시 주식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가능
- 7. ⑦에는 실제 주식 지급 시기를 기재(예시: 부여일로부터 O년 경과 후, 가득조건 달성시 등)
- 8. ⑧에는 주식지급 약정내용 중 부여 주식 수량 산정 근거, 부여 주식 수량의 조정이 발생하는 사항, 최종 지급 규모 결정 방식, 약정 취소 조건, 양도제한 조건 등 ⑥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주요 약정 내용을 기재하되, 기재사항이 많으면 각주로 별도 기재 가능

18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 □ (공시기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결산일이 6·9·12월에 속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속한 사업 연도를 기준으로 함
 - 결산일이 3월인 회사는 당해연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다만, 작성 시 가결산 상태인 경우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되 가결산 자료임을 명시

[에시] 결산일이 12월인 법인은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직전연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3월인 법인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소속회사가 직전 사업연도동안 계열회사에게 판매한 상품 · 용역 거래금액
- □ 작성방법
- □ [주의사항] 계열회사간 거래내역이 없더라도 공시양식 중 「매출액 총계」 칸의 「국내 매출액, 국외매출액, 계」는 작성해야 함
 - O 상품·용역거래란 손익계산서 상 매출(또는 영업수익)로 계상되는 전 계정과목들의 장부상 매출액을 의미

[주의!] 지분법 평가 손익 및 배당금 수익은 계열회사 매출액에서 제외

- O 국외수출을 위해 국내상사에게 판매되는 상품(일명 로컬수출)의 경우 당해 매출액이 소속회사의 국내매출로 계상되면 국내매출로, 국외수출로 계상되면 국외매출로 기재
- ※ 대표회사가 취합하여 기재할 시 국외계열회사가 많을 경우 양식에서 국외계열회사별로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고 소속회사별 국외계열회사 업체수 합계와 매출액 합계를 기재해도 무방 (국외계열회사의 A, B,..부분을 거래업체수로 명기)
- 다만 표 하단에 "소속회사의 국외계열회사별 거래금액은 소속 회사의 공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석을 달 것

<작성양식 18>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매입자						그이 궤	열회사	117	배출액 총	≒ ત્રો						
`		거래		비급	융회시	-	ī	7융회	사	7-11-11-41-11			4 4 4	들회사	, i	기골의 경	5/41
매출	회사	기간	,			> ~11			211	국내계열사 계		ъ		국외계열사 계	11	국내	국외
	부회사)	. –	A	В		소계	С	• •	소계	(매출액)	A	В		(매출액)	계	매출액	매출액
(1/4															
		2/4															
	A	3/4															
,,1		4/4															
비그		소계															
급용		1/4	1			3			4	5							
회		2/4	1														
사	В	3/4	1											6	7	8	9
'		4/4	1														
		소계	2														
	• •																
	소계		10														
		1/4															
금		2/4															
용	C	3/4															
회		4/4															
사		소계															
	<u>···</u> 소계		11)		-												
	<u> </u>		12														
	百州		U4)														

< 기재요령 >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매출발생 회사가 공시하며,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 지분법 평가 손익 및 배당금 수익은 계열회사 매출액에서 제외
- 1. ①에는 B사가 A사에 대한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또는 영업수익, 이하 동일)을 분기별로 구분하여 기재
- 2. ②에는 B사가 A사에 대한 직전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재
- 3. ③과 ④에는 B사가 국내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합계와 국내 금융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합계를 각각 기재
- 4. ⑤에는 B사의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합계(③+④)를 기재
- 5. ⑥에는 B사의 국외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합계를 기재
- 6. ⑦에는 B사의 전체 매출액(계열사, 비계열사 매출액 포함)을 기재. ⑧과 ⑨은 B사의 국내매출액 계 및 국외매출액 계를 각각 기재 < ⑦ = ⑧ + ⑨ >
 - * 매출액총계의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주의사항] 계열회사간 거래내역이 없더라도 「매출액 총계」 칸의 「계, 국내매출액 및 국외매출액」는 작성해야 함

7.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①~②에 모든 소속회사가 A사에게 매출한 금액의 합계를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19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 (공시기준 및 공시기한) 소속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분기공시, 소속회사가 비상장회사인 경우 연1회 공시

구 분	소속회사가 상장회사 인 경우	소속회사가 비상장회사 인 경우
공시기준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공시기한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2월·5월·8월·11월 말일) 이내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대상 및 내용	직전 <u>사업분기</u> 동안 개별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상 품 또는 용역 거래의 매 출 합계액이 그 사업분기 총 매출액의 100분의 5 이 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 우 그 계열회사와의 모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내역	총 매출액의 100분의 5 이 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 우 그 계열회사와의 모든

※ [주의사항] 사업분기(연도)동안 계열회사와 거래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거래 내역 모두를 기재하는 것임(주요 내역만 기재하고 일부를 생략하면 안됨)

- O 상품·용역 거래란 손익계산서 상 매출(또는 영업수익)로 계상되는 전 계정과목들의 장부상 매출액을 의미
- O 매출이 발생된 거래 건(계약 건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건으로도 인식 가능)별로 거래상대방, 업종, 품목, 대금지급 조건,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매출액 등을 기재

- O 사업분기(혹은 사업연도) 동안 거래상대방별로 각각의 거래 건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거래상대방과의 개별 거래 건의 금액(매출액)이 그 거래 상대방과의 총 거래금액(총 매출액)의 1% 미만에 해당하거나, 거래 금액의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공시 가능
- 위와 같이 개별 거래 건들을 합산하여 기재할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거래 건을 기준으로 업종, 품목, 대금지급조건, 거래상대방선정방식 등을 기재(단, 매출액은 합산액을 기재)

<작성양식 19>

가. 상장회사와 국내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분기별)

소속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해당 양식 사용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소	속회사명	거래상대방	업종 품목		대금지급 조건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매출액	
			2	3	4	5	6	
		1						
비금	A			7				
1 % 회								
회 사				8				
	В							
		9						
급	С							
융 회	D							
사								
			전체 계열회	사 합계			(1)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단, 부가가치세는 제외)
- 1. ①에는 A회사와 상품·용역을 거래한 국내 계열회사(매입회사)명을 기재
- 2. ②에는 ⑥과 관련된 A회사의 거래업종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알파벳1자리와 4자리 숫자)의 코드번호와 영위업종명을 기재. [예시] "F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 3. ③에는 ⑥과 관련된 A회사의 거래품목을 기재. [예시] 조립식 주거용 주택 건설, 아파트 건설 등
- 4. ④에는 현금, 어음, 현금·어음 혼용, 어음대체수단 등 실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기재
- 5. ⑤에는 다음의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중 하나를 기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경쟁 방법),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및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참조

선정방식	설 명
경쟁입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한경쟁입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기 경 경 경 표 결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수의계약	특정 상대방을 선정

- 6. ⑦에는 A사의 거래상대방 ①에 대한 매출액 합계를 기재
- 7. ⑧에는 A사가 국내 계열회사들과 거래한 매출액의 합계액을 기재
- 8.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⑨,⑩,⑪에 계열회사별 거래금액의 합계를 비금융회사 소계, 금융회사 소계, 전체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나. 비상장회사와 국내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연1회)

소속회사가 비상장회사인 경우 해당 양식 사용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소	·속회사명	거래상대방	업종	품목	대금지급 조건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매출액		
			2	3	4	5	6		
		1							
비그	A			7					
TE OB ISI									
의 사			A사 소계						
	В								
			비금융호	사 소계			9		
금	С								
급 % 회	D D								
금융회사 소계									
			전체 계열회	사 합계			11)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단, 부가가치세는 제외)
- 1. ①에는 A사와 상품·용역을 거래한 국내계열회사(매입회사)명을 기재
- 2. ②에는 ⑥과 관련된 A사의 거래업종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알파벳1자리와 4자리 숫자)의 코드번호와 영위업종명을 기재. [예시] "F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 3. ③에는 ⑥과 관련된 A사의 거래품목을 기재. [예시] 조립식 주거용 주택 건설, 아파트 건설 등
- 4. ④에는 현금, 어음, 현금 어음 혼용, 어음대체수단 등 실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기재
- 5. ⑤에는 다음의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중 하나를 기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경쟁 방법),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및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참조

선정방식	설 명
경쟁입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한경쟁입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수의계약	특정 상대방을 선정

- 6. ⑦에는 A사의 거래상대방 ①에 대한 매출액 합계를 기재
- 7. ⑧에는 A사가 국내 계열회사들과 거래한 매출액의 합계액을 기재
- 8.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⑨,⑩,⑪에 계열회사별 거래금액의 합계를 비금융회사 소계, 금융회사 소계, 전체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20 계열회사간 물류·IT서비스 거래 현황

가. 계열회사간 물류 거래 현황

- □ (공시기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직전 사업연도 동안 전체 국내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물류 거래 관련 매출액이 그 사업연도 총 매출액(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총액을 의미)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50억 원(상장 회사는 200억원) 이상인 경우, 거래가 이루어진 모든 국내 계열회사와의 물류 매출 관련 거래 현황
- 『주의사항』해당 사업연도 동안 국내 계열회사와의 물류 거래금액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 이면 모든 국내 계열회사와의 물류 거래 내역을 모두 기재하는 것임(기준 금액 미만인 거래 포함)

- O 개별 거래 건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른 물류[H운수 및 창고업(49~52)]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대상에 해당됨
-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코드는 다음 <이해돕기> 참고
- 매출이 발생된 거래 건(계약 건을 원칙으로 하되 세금 계산서를 거래 건으로 인식 가능)별로 거래상대방, 업종, 품목, 대금지급조건,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매출액 등을 기재
- 개별 거래 건별로 각각의 내역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개별 거래 건의 금액(매출액)이 그 거래상대방과의 총 거래금액(총 매출액)의 1% 미만에 해당하거나, 거래금액의 규모가 50억 원 미만(상장회사 200억 원)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공시 가능

- 개별 거래 건들을 합산하여 기재할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거래 건을 기준으로 업종, 품목, 대금지급조건,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등을 기재(단, 매출액은 합산액을 기재)

				< 물류업 표준산입	업분류5	코드 >				
			4910	철도 운송업	49101	철도 여객 운송업				
					49102	철도 화물 운송업				
			4921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49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4922	시외버스 운송업	49220	시외버스 유송업				
		육상운송	4923	부정기 육상 여객운송업	49231	<u></u>				
			1020	10-110-11606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49	파이프			49233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	라이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라인 운송업	4930	도로 화물 운송업	49301	인바 하무 지도차 우소어				
			-000	그그 키르 단이티	49302	일반 화물 지동차 운송업 용달 화물 지동차 운송업				
					49303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49309	기를 되를 지승지 같으며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4940	소화물 전문 운송업	49401	기의 그도 되를 눈이다.				
						4940	그의을 만든 돈이비	49402	극미남 늘찬 배달업	
			4950	파이프라인 운송업	49500	프인 베르ㅂ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사	4000	피어그러난 단6目	: 43000 :	피어그러만 돈이티				
	50	수상 운송업			/ !! -	-1)				
니으스		<u> </u>			(제외)					
미합	51	항공 운송업	크 성남							
H운수 및 창고업 (49°52)			5210	보관 및 창고업	52101	일반 창고업				
$(49^{\circ}52)$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3	농신물 창고업				
					52104	위험 물품 보관업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5291	육상 운송 지원서비스업	52911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				
					52912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친구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창고 및 운송 관련			52915	주치장 운영업				
	52	운송			52919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관련	5292	수상 운송 지원서비스업	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서비스업			52929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5293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52931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공항 운영업				
				<u> </u>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4	화물 취급업	52941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u> </u>	-16 1188	52942	수상 화물 취급업				
			5299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91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JEW .		52992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3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 위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코드가 공시대상인 물류 거래에 해당(여객업, 수상・항공화물 제외)

[예시] 계열회사간 물류거래현황 공시대상 여부 판단

(단위: 백만원)

물류 매입회사	D사	E사	F사	계열사 물류 매출액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
A사	500	4,000	3,000	7,500 (200,000)
B사	_	2,000	1,000	3,000 (50,000)
C사	500	500	_	1,000 (60,000)

^{*} A사, B사, C사는 모두 비상장회사임

- O A사: 계열사 물류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이므로 D사, E사, F사에 대한 물류 매출 현황을 모두 공시
- O B사: 계열사 물류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이지만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이므로 E사, F사에 대한 물류 매출 현황을 모두 공시
- O C사: 계열사 물류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이며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미만이므로 공시의무 없음

나. 계열회사간 IT서비스 거래 현황

- □ (공시기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직전 사업연도 동안 전체 국내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IT서비스 거래 관련 매출액이 그 사업연도 총 매출액(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총액을 의미)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50억 원(상장 회사는 200억원) 이상인 경우, 거래가 이루어진 모든 국내 계열회사와의 IT서비스 매출 관련 거래 현황
- ☞ [주의사항] 해당 사업연도 동안 계열회사와 IT서비스 거래금액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모든 계열회사와의 IT서비스 거래 내역을 모두 기재하는 것임(기준 금액 미만인 거래 포함)

- O 개별 거래 건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른 IT서비스 [J정보통신업(58~63)]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대상에 해당됨
-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코드는 다음 <이해돕기> 참고
- O 매출이 발생된 거래 건(계약 건을 원칙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거래 건으로 인식 가능)별로 거래상대방, 업종, 품목, 대금지급조건, 거래 상대방 선정 방식. 매출액 등을 기재
- O 개별 거래 건별로 각각의 내역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개별 거래 건의 금액(매출액)이 그 거래상대방과의 총 거래금액(총 매출액)의 1% 미만에 해당하거나, 거래금액의 규모가 50억 원 미만(상장회사 200억 원)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공시 가능

- 개별 거래 건들을 합산하여 기재할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거래 건을 기준으로 업종, 품목, 대금지급조건,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등을 기재(단, 매출액은 합산액을 기재)

이해돕기

< IT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코드 >

			5811	서적 출판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12	신문, 잡지 및 정기 긴행물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1-1-1-1-1	58123	정기 광고 간행물 빌행업							
	58	출판업	5819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시스템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상•											
		오디오											
J정보	59	기록물											
통신업 (58~63)		제작 및		(제외)									
(35 03)	60	배급업 방송업	1										
		<u> </u>	-										
	61	통신업											
		컴퓨터프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m	로그래밍, 시스템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	시 <u>그램</u> 통합 및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6311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ස	정보 서비스업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6391	뉴스 제공업	63910	뉴스 제공업							
			63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위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코드가 공시대상인 IT서비스 거래에 해당

[예시] '공시대상 여부 판단'은 앞에서 설명한 '계열회사간 물류 거래 현황' 예시 참조

<작성양식 20>

가. 국내 계열회사간 물류 매출 거래 현황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ال ج				
소속회사명	거래상대방	업종	품목	대금지급 조건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매출액	국내 계열사 물류매출액 계	국내 물류매출액 계	
		2	3	4	5	6			
	1								
A			소 계			7	8	9	
В									
	합 계 ⑩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단, 부가가치세는 제외)
- 1. ①에는 A사와 물류 상품·용역을 거래한 국내 계열회사(매입회사)명을 기재
- 2. ②에는 ⑥과 관련된 거래업종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알파벳1자리와 4자리 숫자)의 코드번호와 영위업종명을 기재. [예시] "H5299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3. ③에는 ⑥과 관련된 거래품목을 기재. [예시] 창고보관, 물품운송 등
- 4. ④에는 현금, 어음, 현금·어음 혼용, 어음대체수단 등 실제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기재
- 5. ⑤에는 다음의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중 하나를 기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경쟁 방법),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및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참조

선정방식	설 명
경쟁입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한경쟁입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수의계약	특정 상대방을 선정

- 6. ⑦에는 A사의 거래상대방 ①에 대한 물류 매출액 합계를 기재
- 7. ⑧에는 거래상대방별 매출액 합계(⑦)를 합산하여 기재
- 8. ⑨에는 A사의 전체 물류 매출액(국내 계열사 물류매출액+국내 비계열사 물류매출액)을 기재. 만일, ⑧(국내 계열사 물류매출액 계) 내역이 없으면 ⑨(국내 물류매출액 계)도 작성할 필요 없음
- 9.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⑩에 모든 소속회사가 국내계열사에 매출한 물류 매출금액의 합계를, ⑪에 모든 소속회사의 전체 물류 매출액(국내계열사 물류 매출액+국내비계열사 물류 매출액)의 합계를 기재

나. 국내 계열회사간 IT서비스 매출 거래 현황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소속회사명	거래상대방	업종	품목	대금지급 조건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매출액	국내계열사 IT서비스 매출액 계	국내 IT서비스 매출액 계	
		2	3	4	5	6			
	1								
A			소 계			7	8	9	
	•••								
	•••								
В									
	합계 10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단, 부가가치세는 제외)
- 1. ①에는 A사와 IT서비스 상품·용역을 거래한 국내 계열회사(매입회사)명을 기재
- 2. ②에는 ⑥과 관련된 거래업종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알파벳1자리와 4자리 숫자)의 코드번호와 영위업종명을 기재. [예시] "J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3. ③에는 ⑥과 관련된 거래품목을 기재. [예시] 시스템구축, 시스템운영, 유지보수사업 등
- 4. ④에는 현금, 어음, 현금·어음 혼용, 어음대체수단 등 실제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기재
- 5. ⑤에는 다음의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중 하나를 기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경쟁 방법),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및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참조

선정방식	설 명
경쟁입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한경쟁입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수의계약	특정 상대방을 선정

- 6. ⑦에는 A사의 거래상대방 ①에 대한 IT서비스 매출액 합계를 기재
- 7. ⑧에는 거래상대방별 매출액 합계(⑦)을 합산하여 기재
- 8. ⑨에는 A사의 전체 IT서비스 매출액(국내계열사 IT서비스 매출액+국내비계열사 IT서비스 매출액)을 기재. 만일, ⑧(국내계열사 IT서비스 매출액 계) 내역이 없으면, ⑨(국내 IT서비스 매출액 계)도 작성할 필요 없음
- 9.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⑩에 모든 소속회사가 국내계열사에 매출한 IT서비스 매출금액의 합계를, ⑪에 모든 소속회사의 전체 IT서비스 매출액(국내계열사 IT서비스 매출액+국내비계열사 IT서비스 매출액)의 합계를 기재

②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

- □ (공시기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직전 사업연도 동안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거래가 있는 경우, 계약의 명칭, 계약기간, 용역대금, 대금산정방식, 거래상대방선정 방식 등을 작성·공시
 - * 공정거래법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등을 의미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 >

- □ 지주회사 등의 개념(공정거래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 지주회사 :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
- 자회사: 지주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고,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아야 함)
- 손자회사 : 자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위 동일)
- □ 주요 행위제한(공정거래법 제17조, 제18조)
- 지주회사 : 설립 및 전환 신고의무. 부채비율 자본총액의 200% 이하 제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사 30%, 비상장 50% 이상) 충족.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5% 이상 비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등
- 자회사 : 손자회사 지분율요건(상장사 30%, 비상장 50% 이상) 충족. 손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등
- 손자회사 : 증손회사(손자회사가 100% 주식을 보유한 회사) 외 계열 회사 주식 소유 금지 등

□ 작성방법

○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료를 수취한 회사가 작성·공시

[주의] 만일 자·손자·증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료를 수취하였다면, 자·손자·증손회사가 작성하여야 함(작성 주체가 지주회사에 국한되지 아니함)

-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의 범위
- · 사업전략, 조직기획, 예산·회계, 마케팅, 인사, 교육, 법무 등 경영 관련 계획의 수립, 이와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 제공
- ㆍ 계열사 업무조정, 성과관리 및 감사
- ㆍ 청구서 작성, 기록활동, 인력 및 물자 분배 등 일일 행정서비스
- ㆍ 채권 확보 및 추심
- · 직원훈련교육
- · 그밖에 경영관리 및 자문을 위하여 제공한 용역 일체

[주의] SI(System Integration)*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용역은 제외

- * 시스템통합·구축, IT 컨설팅, 시스템관리(System Management)를 포괄하는 산업활동
-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계약 건별로 작성하되, 수개의 용역을 하나의 계약으로 통합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석에 대상 용역의 내용을 건별로 기재
 - [예시] 경영관리·자문계약 명칭이 단순히 '업무 용역 계약서'인 경우, 주석에 영업기획, 경영자문, 법무검토, 성과관리 등 계약에 포함된 용역을 나열

<작성양식 21>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 원)

소속 회사명	거래 상대방	경영관리· 자문계약 명	계약기간	경영관리· 자문 관련 용역대금	용역대금 산정방식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Е	1)	2	3	4	(5)
^	F					
A	•••					
	소계			6		
В	•••					
합계				7		

<기재요령>

- 1. ①에는 지주회사와 소속회사 간 체결한 경영관리·자문 관련 계약의 명칭을 계약 건별로 기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부상 명칭을 기재)
- 2. ②에는 경영관리 및 자문 관련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재(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없음(최초지급일 '19.1.1.)"으로 기재)
- 3. ③에는 당해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익계산서상 경영관리·자문 관련 용역수익 금액을 기재
- 4. ④에는 경영관리·자문료 산정방식을 기재
 - ※ (예시) "소속회사 매출액 기준(포함)", "소속회사 원가 기준(미포함)", "소속회사 영업이익 기준 (해당없음)", "업무처리건수 기준(미포함)" 등으로 기재하며, 괄호에는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재(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포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 5. ⑤에는 다음의 거래상대방 산정방식 중 하나를 기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경쟁방법),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및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참조

선정방식	설 명
경쟁입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 한경쟁입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수의계약	특정 상대방을 선정

- 6. ⑥에는 전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경영관리·자문 관련 용역대금의 합계액을 기재
- 7. 대표회사는 ⑦에 전체 소속회사의 연간 용역 수취액의 합계를 기재

②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 □ (공시기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직전 사업연도 동안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부동산 임대차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대상 부동산, 임대차 기간, 거래금액, 대금지급조건 등을 작성·공시
 - * 공정거래법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등을 의미
- □ 작성방법
 - 부동산 임대료를 수취한 회사가 작성·공시

[주의] 만일 자·손자·증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부동산 임대료를 수취하였다면, 자·손자·증손회사가 공시하여야 함(작성 주체가 지주회사에 국한되지 아니함)

- O 전세 계약으로 보증금만을 수취한 경우도 작성 대상
- O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를 전혀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거래 내용을 기재하고 주석에 그 사유를 작성
- O 임대료는 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인식한 손익계산서상 수취액을 기재

<작성양식 22>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m², 백만 원)

소속	거래		대상 부동산		임대차 기간	거래	거래금액 대금지:		
회사명	상대방	소재지	면적	목적물	급대시 기신	보증금	임대료	조건	
	Е	1)	2	3	4	(5)	6	1	
٨	F								
A									
	소계		$\supset \subset$			8	9		
В									
	합계		> <			10	11)		

<기재요령>

- 1. ①에는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최소행정구역(읍·면·동)까지 기재
- 2. ②에는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면적(집합건물인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기재
- 3. ③에는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종류(토지, 건물 등)를 기재
- 4. ④에는 임대차 계약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을 작성하고, 그 옆 ()에 최초 계약일을 기재 [예시] 2024.1.1.~2025.12.31.(2022.1.1.)
- * 재계약(연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계약 개시 시점부터 그 재계약 계약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옆 ()에 최초 계약일을 기재
- 5. ⑤에는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기재
- 6. ⑥에는 직전 사업연도 기간 동안 실제 수취한 임대료를 기재
- 7. ⑦에는 현금, 어음, 현금·어음 혼용, 어음대체수단 등 실제 대금을 지급 받는 방법을 기재
- 8. ⑧, ⑨에는 전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보증금, 임대료의 합계를 각각 기재
- 9. 대표회사는 ⑩,⑪에 전체 소속회사의 연간 보증금, 임대료의 합계를 각각 기재

23 계열회사간 기타자산 거래 현황

- □ (공시기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회사의 결산일이 6·9·12월에 속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속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
 - 결산일이 3월인 회사는 당해연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다만, 작성 시 가결산 상태인 경우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되 가결산 자료임을 명시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소속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동안 국내계열회사에게 매도한 기타자산(유·무형자산) 매도금액(장부에 기재된 기타자산 매도금액)
 - * 매도에는 임대, 리스 등 포함

- 기타자산이란 소속회사가 재무상태표에 비유동자산 중 유·무형 자산으로 계상한 자산을 의미(다음 '이해돕기' 참조)
 - 거래에서 발생한 매도 대가(처분가액, 임대료, 리스료 등)를 기재. 단, 자산의 장부상 처분가액을 기재하므로 각종 평가손익·처분 손익·환산손익 등은 추가로 기재하지 않음
 - [에시] 장부가액 50억원인 건물을 80억원에 매도(부가세 제외)하여 처분이익 30억원, 분기말 미수금 환산이익이 5억원 발생한 경우, 매도가액인 80억원만을 기재

이해돕기

- ☞ 유동자산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현금으로의 교환이 빠른 자산을 의미하며 목적에 따라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 ① 당좌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자산,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등
 - ② 재고자산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
- ☞ 비유동자산 : 보유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이나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 ① 유형자산 :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
 - ⇒ 토지, 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등
 - ② 무형자산: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료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성이 있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 ⇒ 산업재산권, 영업권, 라이선스, 프렌차이즈,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임차 권리금, 토지사용권리, 지상권 혹은 임차권, 지역권 등
 - ③ 투자자산 : 기업이 본래의 사업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인 자산
 - ⇒ 장기금융상품,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장기대여금, 장기성 매출채권, 투자부동산, 보증금(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 ※ 임대 건물의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임대료 수익으로 계상된 경우 관리비 등을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기째
- ※ 건물, 기계장치, 무형자산(상표권 등) 등의 자산이 재무상태표 상에 유·무형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관련 임대료, 사용료 등을 손익계산서 상 매출로 계상할 경우 본 양식에 기재하지 않고 14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양식에 기재하고 상표권 사용거래에 대해서는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양식(24)에도 별도로 기재

<작성양식 23>

가. 유형자산 거래내역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매입자					계	열회사			
				비금성	융회사		금융회사			합계
	회사 (후회사)	기간	A	В		소계	С		소계	(거래금액)
		1/4								
		2/4								
	A	3/4								
비		4/4								
		소계	1			3			4	5
급 융	В	1/4 2/4	1			<u> </u>			4)	3)
회		3/4	1							
사		4/4	1							
		소계	2							
	소계		6							
		1/4								
		2/4								
유	C	3/4								
급 융 회		4/4								
사		소계								
1	• •									
	소계		7							
	합계		8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매도회사가 공시(유형자산)
- 1. ①에는 B사가 A사에게 기타자산 중 유형자산을 매도(임대, 리스 등을 포함. 이하 동일)한 거래 금액 (처분가액)을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재
- 2. ②에는 B사가 A사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동안 기타자산 중 유형자산을 매도한 금액(처분가액)을 기재
- 3. ③과 ④에는 B사가 해당 분기에 기타자산 중 유형자산을 비금융 계열회사와 금융 계열회사에게 매도한 금액(처분가액)의 합계를 각각 기재
- 3. ⑤에는 B사가 계열회사에게 기타자산 중 유형자산을 매도한 금액의 분기별 합계(③+④)를 기재
- 4.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⑥⑦⑧에 모든 소속회사가 A사에게 기타자산 중 유형자산을 매도한 금액의 합계액을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및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 ※ (참고) 유·무형자산으로 구분이 어려운 성격의 자산은 유형자산 양식에 합산하여 기재

나. 무형자산 거래내역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매입자					계	열회사				
	기 대도회사 기 (소속회사)			비금성	융회사			금융회사	합계		
			A	В		소계	С		소계	(거래금액)	
		1/4									
		2/4									
	A	3/4									
ㅂ]		4/4									
금		소계									
융	В	1/4	1			3			4)	5	
회		2/4	1								
사		3/4 4/4	1								
		4/4 소계	2								
		エハ									
	소계		6								
		1/4									
_		2/4									
급 슝	C	3/4									
회		4/4									
사		소계									
'											
	소계		7								
	합계		8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매도회사가 공시(무형자산)
- 1. ①에는 B사가 A사에게 기타자산 중 무형자산을 매도한 거래 금액(처분가액)을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재하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을 포함하는 경우 하단에 각주로 해당 공시 날짜를 연월일 형식(0000.00.00)으로 기재
- 2. ②에는 B사가 A사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동안 기타자산 중 무형자산을 매도한 금액(처분가액)을 기재
- 3. ③과 ④에는 B사가 해당 분기에 기타자산 중 무형자산을 비금융 계열회사와 금융 계열회사에게 매도한 금액(처분가액)의 합계를 각각 기재
- 4. ⑤에는 B사가 계열회사에게 기타자산 중 무형자산을 매도한 금액의 분기별 합계(③+④)를 기재
- 5.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⑥⑦⑧에 모든 소속회사가 A사에게 기타자산 중 무형자산을 매도한 금액의 합계액을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및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24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 □ (공시기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직전 사업연도 동안 국내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상표권 보유회사가 거래상대방, 대상 상표권, 사용기간, 거래금액, 사용료 산정방식 등을 작성

- O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 소속회사들이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집단 고유의 기호·문자·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권(CI, Corporate Identity)을 의미
 - 기업집단 명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특정상품 또는 특정서비스의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하여 사용중인 상표는 제외
 - [에시] 가상의 기업집단 「공정」(이하 같음)에서 '공정'은 공시대상에 포함되나 소속 회사 공정식품이 제조판매하는 '공정 우유'는 제외
 - 복수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공시 대상
 - [에시] 기업집단 「공정」 소속회사들이 '공정' 및 '공시' CI 사용하는 경우 모두 공시 대상
- O (대상 상표권) 작성시 상표권의 기본이 되는 명칭(삼성, 현대, LG 등) 및 특허청 등록번호를 표시
 - [예시] '공정'00-0000000 외 00개, '공시' 00-0000000 외 00개(대상 CI가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작성)
 - 복수의 상표권을 사용하면서 사용계약을 따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 건별로 작성

-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CI 및 그 외의 상표권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상표권 사용료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를 그대로 공시하되, 주석에 기업집단 CI 이외 상표권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수취하였음을 표시
 - [에시] (주석) 당사는 기업집단 명칭 '공정'이 포함된 상표권 000개 이외의 개별 상품 등의 상표권 000개를 포괄하여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O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가 작성·공시
-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회사라도 본 회사의 상표권을 국내 계열회사가 사용한 경우는 무상거래내역에 기재하고 무상거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단순히 '무상사용계약 체결', '사용료 관련 별도 계약 체결 없음' 등으로 작성하는 것은 배제)
 - [에시] 사회 공헌 등으로 인한 브랜드 홍보를 위해 상표권 무상사용 허용, 영위 사업의 특성상 브랜드 사용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영위 사업의 특성을 간략히 기재), 실적 부진으로 영업손실 발생 등
- O 상표권에 대한 유상/무상 거래 구분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
 - [에시] 계약서상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가 유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실제 대가는 추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공시대상 연도에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경우 → '유상거래' 작성양식에 거래내용을 작성
- 연간 사용료는 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익 계산서상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을 기재
- 상표권을 복수의 회사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어 권리지분율 (분배기준율)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주석에 해당 내용을 표시
- O 상표권 유·무상 거래 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작성양식 24>

가. 유상거래 현황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소속회사명	거래상대방	대상 상표권	사용기간	연간 사용료 수취액	사용료 산정방식
	С	1	2	3	4
Λ.	D				
A	•••				
	소계			5	
В	•••				
रे	합계			6	

나. 무상거래 현황

(직전 사업년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소속회사명	거래상대방	대상 상표권	사용계약 유무	사용기간	무상거래 사유
	Е	7	8	9	10
A	F				
	•••				
В					

〈기재요령〉

- ※ 기업집단 내 소속회사들이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집단 고유의 기호·문자·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권 사용에 대한 거래내용으로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가 작성·공시
- 1. ①,⑦에는 상표권에 포함되는 주된 명칭 및 상표권 사용계약의 대상이 된 상표권의 특허청 등록번호를 기재(복수일 경우 대표 상표권 ○○외 몇 개로 기재) [예시] '△△'00-0000000 외 00개
- 2. ②, ⑨에는 상표권 사용계약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 기간을 기재
- 3. ③에는 당해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익계산서상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을 기재
- 4. ④에는 상표권 사용계약으로 정한 사용료 산정방식을 기재 [예시] (매출액-광고선전비) × 0.**%(상표권 사용료율) × (상표권공동소유 회사간 분배기준율)
- 5. ⑤에는 전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연간 상표권 사용료의 합계액을 기재
- 6. 대표회사는 ⑥에 전체 소속회사의 연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의 합계를 기재
- 7. ⑧에는 상표권 무상사용에 대한 계약유무를 O, X로 기재
- 8. ⑩에는 무상사용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예시] 사회 공헌 등으로 인한 브랜드 홍보를 위해 상표권 무상사용 허용, 영위 사업의 특성상 브랜드 사용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영위 사업의 특성을 간략히 기재), 실적 부진으로 영업손실 발생 등

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자산 거래 현황

- □ (공시기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회사의 결산일이 6·9·12월에 속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속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
 - 결산일이 3월인 회사는 당해연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다만, 작성 시 가결산 상태인 경우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되 가결산 자료임을 명시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소속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동안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계열회사 제외)에게 매도*한 기타자산의 매도장부가액 및 매입*한 기타자산의 매입장부가액
 - * 매도 및 매입에는 임대, 리스 등 포함

- 기타자산이란 소속회사가 재무상태표에 비유동자산 중 유·무형자산 으로 계상한 자산을 의미
- 거래에서 발생한 매도(매입) 대가(처분가액, 임대료, 리스료 등)를 기재
- 자산의 장부상 처분가액을 기재하므로 각종 평가손익·처분 손익·환산손익 등은 추가로 기재하지 않음

<작성양식 25>

가. 기타자산 매도 거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관계	거래					
			동일인, 배우자,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	합계
매도	매도회사		혈족1촌	센크	1 12	미 6 년 11년 6	됩계
(소설	녹회사)						
		1/4	①	3	4	5	6
		2/4	①				
	A	3/4	1				
비		4/4	1				
금		소계	2				
그 %	В	1/4					
회		2/4					
사		3/4					
		4/4					
		소계					
	소계		7				
		1/4					
ュ		2/4					
급 윻	C	3/4					
회		4/4					
사		소계					
1							
	소계		8				
	합계		9				

<u>나. 기타자산 매입 거래</u>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관계 매입회사 (소속회사)		거래 기간	동일인, 배우자, 혈족1촌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	합계
비금융회사	A	1/4	①	3	4	5	6
		2/4	1				
		3/4	1				
		4/4	①				
		소계	2				
	В	1/4					
		2/4					
		3/4					
		4/4					
		소계					
	٠٠.		(F)				
	소계	1/4	7				
금융회사	С	2/4					
		3/4					
		4/4					
		 소계					
		٠-/١١					
	소계		8				
	합계		9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 1. ①에는 A사가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과 기타자산(이하 자산)을 매도(매입)한 금액을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재
- 2. ②에는 A사가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과 직전 사업연도동안 기타자산(이하 자산)을 매도(매입) 한 금액을 기재
- 3. ③에는 A사가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친족 (배우자, 혈족4촌 이내, 인척3촌 이내 및 기타친족)을 의미하되, 배우자 및 혈족1촌 제외]과 기타 자산을 매도(매입)한 금액을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재
- 3. ④에는 A사가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임원 등을 의미]과 기타자산을 매도(매입)한 금액을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재
- 4. ⑤에는 A사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과 기타자산을 매도(매입)한 금액을 분기별로 합산 하여 기재
- 5. ⑥에는 A사가 특수관계인(계열사 제외)에게 매도(매입)한 기타자산 금액의 분기별 합계(①+③+④+⑤)를 기재
- 6. 대표회사는 ⑦⑧⑨에 모든 계열회사가 동일인, 배우자, 혈족1촌에게 매도하거나 이들로부터 매입한 기타자산 금액의 합계액을 '비금융사', '금융사' 및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26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잔액 현황

- □ (공시기준) 금년도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소속회사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국내계열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잔액

- O 거래상대방별 채권 잔액을 기재하되, 실물채권과 금융채권의 장부상 잔액(회사의 재무상태표상 분류 기준을 준용)
- 실물 채권 :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보증금 잔액
- 금융 채권 : 대여금, 유가증권 중 회사채 잔액
- 금융사의 경우 실물채권에는 미수금·선급금·보증금을, 금융 채권에는 대출채권을 기재

<작성양식 26>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ו ד		국내 계열회사																			
\	H무자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				
-11 -71 -51	\.)1	A						소계			С						소계			(채권금액)		
채권회 (소속회		실물 채권	금융 채권	계				실물 채권	금융 채권	계	실물 채권	금융 채권	계							실물 채권	금융 채권	계
	A																					
비금 융회	В	1	2	3						4									(5)	6	7	8
사																						
	소계																					
	С																					
금융	D																					
회사																						
	소계																					
합계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채권회사가 공시
- 1. ①에는 B사가 A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실물채권(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보증금)잔액을, ②에는 B사가 A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금융채권(대여금, 유가증권 중 회사채) 잔액을, ③에는 ①과 ②의 합계 금액을 기재
- 2. ④와 ⑤에는 B사의 비금융 계열회사와 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채권 잔액의 합계를 각각 기재
- 3. ⑥에는 B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비금융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실물채권 합계액을, ⑦에는 비금융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채권 합계액을, ⑧에는 ⑥과 ⑦의 합계액을 기재
- 4. 대표회사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합계란을 기재

27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 □ (공시기준) 직전 분기말 기준
- 【 (공시기한)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5월·8월·11월말일) 이내
- □ 공시내용
 - O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채무보증 건별로 채무보증 받은 회사, 금융기관, 여신잔액, 채무보증금액, 채무보증기간 등
 - O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채무보증 건별로 채무보증 받은 회사, 채권자, 채무금액잔액, 채무보증금액, 채무보증기간 등
 - (이행보증·납세보증 등)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기 채무보증 중「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 「납세보증」,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사업을 위하여 발주처등에 제공한 채무보증」등의 건수와 보증금액

□ 작성방법

- 「여신잔액」은 해당 분기말 기준 여신 잔액을 기재하되, 당좌차월 · 어음할인과 같이 한도 약정을 맺은 경우는 당해 한도를 여신 으로 기재
 - 「채무보증금액」은 채무보증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재하고, 채무보증약정 후 여신의 발생이 없었다 하더라도 채무보증금액 칸에는 보증약정금액을 기재
 - 외화표시 채무보증일 경우 각 분기 말의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다만, 회사 내에 별도로 적용하는 환율이 있는 경우 해당 환율을 사용 후 주석에 기재)

- ^①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②납세보증, ^③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사업을 위하여 발주처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은 "다. 이행보증·납세보증 등"에만 기재
- O "다. 이행보증·납세보증 등"에는 <u>타인이 지급·이행하여야</u> 하는 의무에 관하여 타인을 채무자(피보증인)로 하여 소속회사가 제공한 이행보증·납세보증만 포함되므로,
 - 국내·외 계열회사, 개인, 조합, 비계열회사 등 타인을 채무자 (피보증인)로 하는 이행보증 · 납세보증 등을 공시하고,
 - 소속회사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회사를 이용하여 계약상대방 등에게 이행보증을 제공한 경우 등은 제외
-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의 성격을 갖는 자금보충 약정, 책임준공약정, (조건부)채무인수 등도 "다. 이행보증·납세 보증 등"에 공시
 - 건설업 영위법인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인 채무자에게 제공한 채무보증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사업을 위하여 발주처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란에 기재

<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및 제24조」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금융보험사 제외)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채무보증을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라 함

* 「여신」이란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의미

<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모든 채무보증을 의미하며, 크게 「공정거래법상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¹⁾」과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이 아닌 채무보증²⁾」으로 구분

- 1. 공정거래법상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 공정거래법 제24조 단서 및 각 호에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채무보증을 말함
- 2.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이 아닌 채무보증 : 금융사가 계열회사 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과 관련되지 않은 채무보증*. 국외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을 들 수 있음
 - *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회사간 직접 차입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국외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역신과 관련된 채무보증, 계열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 **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이므로 조합, 개인, 국외 계열사, 비계열사 등에 대한 채무보증도 포함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27>

가.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백만원)

채무보증한 회사 (소속회사)	채무보증 받은 국내계열회사	금융기관	여신 잔액	채무보증 금액	채무보증기간
		1	2	3	4
A					
	소 계				
В					
С					
	합계		5	6	

< 기재요령 >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채무보증한 회사(소속회사)에 금융보험사는 제외
- 1. ①에는 여신을 제공한 금융기관명을 기재
- 2. ②에는 채무보증을 받은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여신 잔액을 기재
- 3. ③에는 채무보증금액을, ④에는 채무보증기간을 기재
- 4.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⑤~⑥에 여신 잔액, 채무보증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나.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백만원)

	채무보증한 회사 (소속회사)	채무보증	받은 자	채권자	채무금액 잔액	채무보증 금액	채무보증기간
		국내		1	2	3	4
		계열회사					
비급	A	-) r)	(5)				
디ㅁ 호 중		기타					
의 사			소 계				
	В						
	用	금융회사 학	합계		6	7	
		국내					
		계열회사					
급	С	-1-1					
그 영화		기타					
사			소 계				
	D						
	Ţ	금융회사 합	·계		8	9	
	전체 7	세열회사 합	·계		10	11)	

< 기재요령 >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채무보증한 회사(소속회사)에 금융보험사 포함, 채무보증을 받은 자에 국외 계열사, 조합, 개인 등 포함
- 1. 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 납세보증,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사업을 위하여 발주처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 등은 "다. 이행보증·납세보증 등"에만 기재
- 2. ①에는 채권자명을, ②에는 채무금액잔액을, ③에는 채무보증금액을, ④에는 채무보증기간을 기재
- 3. ⑤'기타'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받은 자는 국내 계열회사를 제외한 개인, 조합, 국외 계열회사, 비계열회사 등을 의미함
- 4.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⑥~⑪에 모든 계열회사의 채무금액 잔액, 채무보증금액을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다. 이행보증ㆍ납세보증 등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보증한 회사 (소속회사)	건 수	보증 금액
	①	2	3
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			
[집절ㆍ계리ㆍ아사ㆍ사리모등 등의 이행모등			
	계		
		4	5
n lulu z			
납세보증			
	계		
		6	7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사업을 위하여 발주처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			
	계		
합 계		8	9

< 기재요령 >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타인(국내·외 계열회사, 개인, 조합, 비계열사 등)이 지급·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에 관하여 타인을 채무자(피보증인)로 하여 소속회사가 제공한 이행보증·납세보증 등을 기재하고, 소속회사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발급한 이행보증 등은 제외
- ※ 이행보증·납세보증 등에 대한 채무금액 잔액은 별도 표시를 희망할 경우 각주에 기재하여도 무방
- 1. ①에는 공시대상 회사(공시 주체)의 사명을 기재
- 2.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중 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의 분기말 현재 존재하는 건수와 총 보증금액을 ②와 ③에 각각 기재
- 3.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중 납세보증의 분기말 현재 존재하는 건수와 총 보증금액을 ④와 ⑤에 각각 기재
- 4.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사업을 위하여 발주처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의 분기말 현재 존재하는 건수와 총 보증금액을 ⑥과 ⑦에 각각 기재
- 5. 대표회사는 ⑧과 ⑨에 계열회사 전체의 이행보증·납세보증 등의 건수와 총 보증금액의 합계를 각각 기재

28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 □ (공시기준) 금년도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소속회사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국내 계열회사를 위해 제공한 담보 내역(물적담보 잔액, 내용, 제공사유 등)

□ 작성방법

- O <u>국내 계열회사(채무자)를 위하여</u>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담보를 제공한 소속회사가 그 담보 내역을 공시
 - 소속회사가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제외
- O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사업을 위하여 발주처 등에 제공한 담보는 별도 칸에만 기재

< 채무보증과 담보제공의 차이점 >

채무보증은 '인적담보'를 의미하며, 담보제공은 물권담보, 예금담보 등 '물적 담보'를 의미함. 다만, 백지어음 제공 등 사실상 인적담보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채무보증에 해당됨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28>

가. 계열회사를 위한 담보 내역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 L . ' I	<u> </u>
	제공회사 (소속회사)	제공받는 회사 (대상 계열회사)	내용	담보 잔액	제공 사유
固			1	2	3
급	A				
융		소 계		4	
회 사	В				
^F	11	금융회사 합계		5	
7	С				
급융					
회	D				
사	Ť	금융회사 합계		6	
	전체 기	계열회사 합계		7	

< 기재요령 >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담보를 제공한 회사가 공시
- 1. ①에는 담보를 제공한 회사가 제공한 담보의 내용[예, 부동산, 국채, OO사 발행 사채 등]을 기재
- 2. ②에는 사업연도말 담보 잔액을 기재
- 3. ③에는 담보제공 이유[예, OO사의 금융기관 대출 등]를 기재
- 4. ④에는 A사가 모든 계열회사를 위해 제공한 담보 잔액 합계를 기재
- 5.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⑤~⑦에 모든 계열회사의 담보 잔액을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나. 계열회사를 위해 제공한 담보 내역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담보제공 내역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백만원)

		<u> </u>	<u> </u>
구 분	제공회사 (소속회사)	건 수	담보 잔액
	①	2	3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사업을 위하여			
발주처 등에 제공한 담보			
	합 계	4	5

< 기재요령 >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자신의 채무를 위한 담보제공은 제외
- 1. ①에는 공시 대상 회사(공시 주체)의 사명을 기재
- 2. 채무자인 국내 계열회사를 위해 제공한 담보 내역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사업을 위하여 국내 계열회사인 발주처 등에 제공한 현존하는 담보 건수와 담보 잔액을 ②와 ③에 각각 기재
- 3. 대표회사는 ④와 ⑤에 전체 계열회사의 현존하는 담보제공 건수와 담보 잔액 합계를 기재

29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 □ (대상회사)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함. 이하 '총수일가')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총수일가)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공정거래법 제47조 참조)
 - * 대상 해당여부는 금년도 지정일 기준. 금년도 지정일에 위 대상회사 기준에 해당되면, 최근 3개년도 거래내역을 빠짐없이 공시
- □ (공시기준) 금년도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O 결산일이 6·9·12월에 속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속한 사업 연도를 기준으로함
 - 결산일이 3월인 회사는 당해연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다만, 작성 시 가결산 상태인 경우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되 가결산 자료임을 명시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공시대상 회사별로 최근 3개 연도 동안 국내 계열 회사 및 특수관계인(총수일가)과의 상품·용역, 자금 및 자산(유 가증권, 기타자산) 거래 현황 등을 공시
 - * 최근 3개 연도 분을 공시하되 2025년 5월에 공시하는 경우 2025년 신규지정 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1개 연도 분을, 2024년 신규지정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2개 연도 분을 작성
 - **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수 변동 등으로 인해 공시대상이 된 소속회사는 본 매뉴얼 ② 양식에 따라 최근 3개 연도를 공시

○ 공시대상 회사의 계열사·특수관계인(총수일가)에 대한 매출·대여· 매도 뿐 아니라 매입·차입 등도 구분하여 기재

□ 작성방법

- O 상품·용역거래는 손익계산서 상 매출(또는 영업수익)로 계상되는 전 계정과목들의 장부상 매출액을 의미
- 해당 기간 동안 차입(또는 대여)한 금액을 발생금액 기준으로 작성
- 해당 기간 동안 차입(또는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였어도 상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총 차입(또는 대여)금액을 기재하며, 만기 연장된 금액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된 금액만을 기재
- O 소속회사가 자신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국내계열회사 또는 특수 관계인(총수일가)에게 양도하고 현금(또는 현물 등)을 받은 경우 공시대상
 - 매도에는 매각 뿐 아니라 제공, 발행 등도 포함된 개념으로 유상 증자, 교환 등을 통해 유가증권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무상증자는 현금 등 대가를 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공시대상 아님)
 - 유가증권은 주식,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 3개월 미만 채권 등도 포함), 수익증권인 펀드, 기업어음(CP) 등 거래대상이 되는 증권을 의미
 - * 수익증권의 환매, 채권이나 CP 매입 후 상환 등은 공시대상이 아님
- 기타자산이란 소속회사가 재무상태표에 유·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자산을 의미
- 거래에서 발생한 매도 대가(처분가액, 임대료, 리스료 등)를 기재. 자산의 장부상 처분가액을 기재하므로 각종 평가손익·처분손익· 환산손익 등은 추가로 기재하지 않음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29>

가. 최근 3개년도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내역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매출호 (소속		국내계열사 매출액	매출액	비중 (%)	국내계열사 매출액	매출액	비중 (%)	국내계열사 매출액	매출액	비중 (%)
	A	1	2	3	4					
비금 융회	В									
B 외 사										
	소계	5								
_ ^	С									
금융 회사										
	소계	6								
	합계	7								

나. 최근 3개년도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매입 내역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매입호 (소속		국내계열사 매입액	매입액	비중 (%)	국내계열사 매입액	매입액	비중 (%)	국내계열사 매입액	매입액	비중 (%)
	A	1	2	3	4					
비금	В									
융회 사										
	소계	5								
	С									
금 회 사										
34/1	소계	6								
	합계	7								

< 기재요령 >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 ※ 최근 3개년도분을 당기, 전기, 전전기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2025.5월에 공시하는 경우 당기는 2024.1월~2024.12월 말 기준, 전기는 2023.1월~2023.12월 말 기준, 전건기는 2022.1월~2022.12월 말 기준

- 1. ①에는 A사의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매출(또는 매입) 합계를 기재 * 매입액은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금액을 기재
- 2. ②에는 A사의 해당기간 동안의 전체 매출(또는 매입) 합계를 기재
- 3. ③에는 A사의 국내계열회사 매출액(또는 국내계열회사 매입액)을 전체 매출(매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기재(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4. ④에는 해당 기간(전기) 동안 A사의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매출(또는 매입) 합계를 기재(이하 같음)
- 5.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⑤~⑦에 해당 소속회사들의 국내계열사 매출(매입)액, 전체 매출(매입)액, 국 내계열사 매출(매입) 비중의 합계를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다. 최근 3개년도 차입 내역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관계 당기						전	기			전경	런 <i>기</i>	
]회사 속회사)	국내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소계	국내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소계	국내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소계
日	A	1	2	3	4	5							
급 % 회	В												
회													
사	소계	6											
급	С												
융 회													
사	소계	7											
	합계	8											

라. 최근 3개년도 대여 내역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 관계		당	7]			전	기			전경	<u>년</u> 기	
	여회사 속회사)	국내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소계	국내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소계	국내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소계
目	A	1	2	3	4	5							
	В												
금융회	• •												
사	소계	6											
금	С												
금 융 회 사													
사	소계	7											
	합계	8											

< 기재요령 >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 ※ 최근 3개년도분을 당기, 전기, 전전기로 구분하여 기재
 - [예시] 2025.5월에 공시하는 경우 당기는 2024.1월~2024.12월 말 기준, 전기는 2023.1월~2023.12월 말 기준, 전전기는 2022.1월~2022.12월 말 기준
- 1. ①에는 A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차입(또는 대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일반 차입과 한도 약정에 따른 차입이 모두 있는 경우, <u>직전 사업연도 총 일반 차입 금액 + 직전 사업</u> 연도말 실제 잔액(채무 잔액)을 기재하고 각주에 표기
- 2. ②에는 A사가 동일인, 배우자 및 혈족1촌에게 차입(또는 대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3. ③에는 A사가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친족 (배우자, 혈족4촌 이내, 인척3촌 이내 및 기타친족)을 의미하되, 배우자 및 혈족1촌 제외]에게 차입(또는 대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4. ④에는 A사가 특수관계인(국내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총수일가) 포함)에게 차입(또는 대여)한 금액의 합계(①+②+③)를 기재
- 5. ⑤에는 해당기간(전기) 동안 A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차입(또는 대여)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이하 같음) ※일반 차입과 한도 약정에 따른 차입이 모두 있는 경우, 해당기간(전기) 사업연도 총 일반 차입 금액 + 해당 기간(전기) 사업연도말 실제 잔액(채무 잔액)을 기재하고 각주에 표기
- 6.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⑥~⑧에 해당 소속회사가 자금을 차입(또는 대여)한 금액의 합계를 비금융사, 금융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마. 최근 3개년도 자산(유가증권, 기타자산) 매도 내역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당	기			전	7]			전경	크기	
	관계 도회사 속회사)	유형	국내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1촌	친족	소계	국내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소계	국내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1촌	친족	소계
		유가증권	1	2	3	4	5							
l HI	A	유형자산	6											
비금융회사		무형자산	7											
융		유가증권												
회사	В	유형자산												
		무형자산												
	소	.계	8											
_		유가증권												
융	С [유형자산												
금융회사		무형자산												
^	소	:계	9											
	<u>합</u> 겨)	10											

바. 최근 3개년도 자산(유가증권, 기타자산) 매입 내역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관계			당	7]			전	7]			전경	턴기	
	입회사 속회사)	유형	국내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소계	국내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1촌	친족	소계	국내 계열회사	동일인, 배우자, 혈족 1촌	친족	소계
		유가증권	1	2	3	4	5							
ادر	A	유형자산	6											
비금융회사		무형자산	7											
융		유가증권												
회	В	유형자산												
		무형자산												
	소	.계	8											
_		유가증권												
유	С	유형자산												
금융회사		무형자산												
^+	소	.계	9											
	합겨]	10											

< 기재요령 >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 ※ 최근 3개년도분을 당기, 전기, 전전기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2025.5월에 공시하는 경우 당기는 2024.1월~2024.12월 말 기준, 전기는 2023.1월~2023.12월 말 기준, 전전기는 2022.1월~2022.12월 말 기준

- 1. ①에는 A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유가증권을 매도(또는 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2. ②에는 A사가 동일인, 배우자 및 혈족1촌에게 유가증권을 매도(또는 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3. ③에는 A사가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친족 (배우자, 혈족4촌 이내, 인척3촌 이내 및 기타친족)을 의미하되, 배우자 및 혈족1촌 제외]에게 유가증권을 매도(또는 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4. ④에는 A사가 특수관계인(국내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총수일가) 포함)에게 유가증권을 매도(또 는 매입)한 금액의 합계(①+②+③)를 기재
- 5. ⑤에는 해당기간(전기) 동안 A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유가증권을 매도(또는 매입)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
- 6. ⑥에는 A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유형자산을 매도(또는 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이하 같음)
- 7. ⑦에는 A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무형자산을 매도(또는 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이하 같음)
- 8.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⑧~⑩에 해당 소속회사들이 유가증권 및 기타자산을 매도(또는 매입)한 금액 의 합계를 비금융사, 금융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30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 □ (공시기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 (공시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 (공시내용)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유가증권, 기타자산), 상품 · 용역 거래금액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의미
 - ※ 본 3 항목은 공익법인과 거래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공시함(공익법인이 공시 하는 내용이 아님)

□ 작성방법

- O 해당 기간 동안 차입(또는 대여)한 금액을 발생금액 기준으로 작성
 - 해당 기간 동안 차입(또는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였어도 상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총 차입(또는 대여)금액을 기재하며, 만기 연장된 금액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된 금액만을 기재
- O 유가증권은 주식,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 3개월 미만 채권 등도 포함), 수익증권인 펀드, 기업어음(CP) 등 거래대상이 되는 증권을 의미
 - * 수익증권의 환매. 채권이나 CP 매입 후 상환 등은 공시대상이 아님
- O 소속회사가 자신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공익법인에게 양도하고 (또는 양도받고) 현금·현물 등을 받은 경우(또는 준 경우) 공시대상
 - 즉, 매도에는 매각 뿐 아니라 제공, 발행 등도 포함된 개념으로 유상증자, 교환 등을 통해 유가증권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 (무상증자는 현금 등 대가를 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공시대상 아님)
 - ※ 기업집단현황공시의 경우 출연금, 기부금 등 대가성 없는 지원금은 공시대상이 아님

- O 상품·용역거래는 손익계산서 상 매출(또는 영업수익)로 계상되는 전 계정과목들의 장부상 매출액을 의미
- 기타자산이란 소속회사가 재무상태표에 유·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자산을 의미
 - 거래에서 발생한 매도 대가(처분가액, 임대료, 리스료 등)를 기재. 자산의 장부상 처분가액을 기재하므로 각종 평가손익·처분손익· 환산손익 등은 추가로 기재하지 않음

□ 공시양식 및 기재요령

<작성양식 30>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거래상대방	자	금	유가	증권	상품	• 용역	기타	자산
소속	-회사	(공익법인)	차입	대여	매도	매입	매출	매입	매도	매입
		a	1	2	3	4	5	6	7	8
비	A	b								
금	D	a								
융	В	b								
회										
사	2 -J]	a	9	9	9	9	9	9	9	9
	소계	b								
급	С									
융										
회	소계	a	10	10	10	10	10	10	10	10
사	프게	b								
	합계	a	11)	11)	11)	11)	11)	11)	11)	11)
	ㅂ기	b								

- ※ 개별 재무제표 기준
- 1. ①에는 A사(소속회사)가 a(공익법인)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2. ②에는 A사가 a에게 대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3. ③에는 A사가 a에게 유가증권을 매도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4. ④에는 A사가 a로부터 유가증권을 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5. ⑤에는 A사의 a에 대한 매출 합계를 기재
- 6. ⑥에는 A사의 a로부터의 매입 합계를 기재 * 매입액은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금액을 기재
- 7. ⑦에는 A사가 a에게 기타자산을 매도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8. ⑧에는 A사가 a로부터 기타자산을 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9.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⑨~⑪에 모든 소속회사가 a(공익법인)로부터 차입·대여한 금액, 유가증권을 매도·매입한 금액, 매출·매입 금액, 기타자산을 매도·매입한 금액의 합계를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7 공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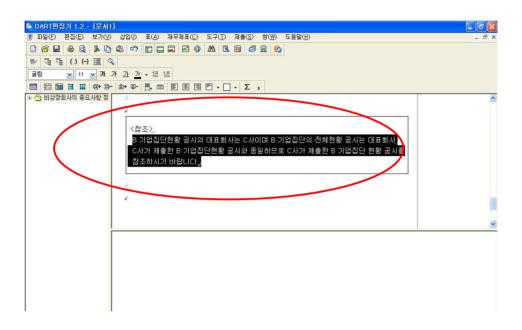
□ 공시대상회사는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

순 서	방 법
1. 전자문서 제출인 등록신청	 ○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 초기화면에서 '고유번호 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 -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등록'을 선택하여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면제 -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관련서류를 파일로 직접 첨부하여 제출 ○ 담당자의 업무처리 후(영업일 기준 최대 익일까지) 초기화면의 '신청결과 조회'를 클릭하여 결과 확인 ※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DART인증서를 발급/폐기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변경코드'가 필요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 ※ 비밀번호변경코드를 분실한 경우 '비밀번호등 재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재발급 신청
2. S/W설치	 접수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자료실'에서 '(S/W) DART 편집기 설치본'을 다운로드 하여 설치 본 프로그램 설치 후 인터넷을 통하여 최신 업데이트 파일이 추가로 설치됨
3. 인증서 발급 및 등록	 ○ 공동인증서와 DART인증서 중 한 가지 사용 - 공동인증서 ① 정부에서 공인하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은행, 증권사 등)에서 발급 ② 접수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하단의 '등록/재등록'을 클릭하여등록 신청 ③ 안내에 따라 나머지 과정을 모두 진행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 - DART인증서 ① 접수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② '인증서 관리-DART인증서 발급'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발급이 완료됨 ※ DART인증서 발급 단계에서 입력하는 인증서 암호는 전자서명을 할 때 사용되므로 반드시 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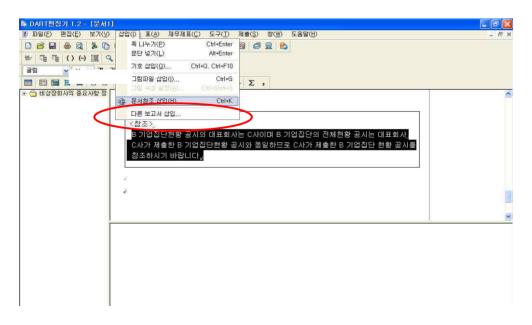
순 서	방 법
4. 문서작성	 ○ '윈도우 시작버튼 - 프로그램 - DART 제출소프트웨어 - DART편집기'를 클릭하여 DART편집기 실행 ① '파일-새 문서'메뉴를 클릭 후 서식을 열어 작성 ② 문서 작성이 끝나면 '도구-파일형식 검사'메뉴를 실행하여 문서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 ③ '파일-전자공시 화면 미리보기'메뉴를 실행하여 공시용 화면 점검 ※ 접수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한 지침서인 '전자문서제출요령'을 다운로드하여 참고
5. 전송파일 만들기	① DART편집기의 '제출-전송파일 생성'메뉴 실행 ② 제출의무자 고유번호 입력하고 업무 및 보고서, 첨부파일 등을 선택 ③ 전송파일명 및 연락처 입력 ④ 전자서명 창이 뜨면 위의 순서 '[3] 인증서발급 및 등록'에 따라 발급 / 등록한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 ⑤ 전송파일(DRT)이 생성됨
6. 전송파일 제출 및 결과확인	 의의 순서 '[5] 전송파일 만들기' 완료 후 바로 제출 버튼을 클릭하거나 DART편집기의 '제출-전송파일 제출' 메뉴를 실행하면 인터넷을 통해 즉시 제출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함 또는 접수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문서제출-신규제출' 메뉴를 클릭하여 접수여부를 확인 ※ 첨부서류만 추가로 제출할 경우에는 '첨부추가 제출' 메뉴를 클릭하여 제출 ※ 접수시간 : 평일 07:30 ~ 19:00 당일접수 : 07:30 ~ 18:00 의일접수 : 18:00이후~19:00(★공시기한 마지막날 18시를 넘지말 것)
7. 공시열람	ㅇ 공시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서 조회
※ 문의전화	 공정위 소관 공시제도 안내 전화번호: 044-200-4869 제출S/W 및 접수・공시홈페이지 사용법 안내(금감원 전자공시 안내) 전화번호: (국번없이) 1332 (5번 → 1번 → 1번) ※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홈페이지 자료실의 전자문서제출요령 참고

☞ 참조공시 연결 작업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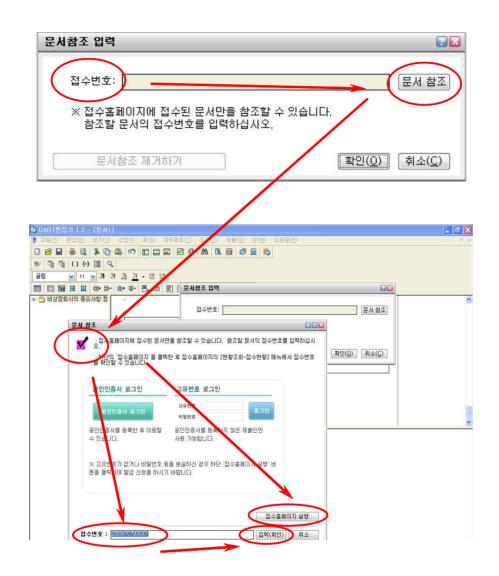
- ※ DART편집기 상에서 기업집단현황공시 양식 작성시 양식 첫 장의 참조 박스 내용에 대표회사에서 작성한 공시(기업집단전체현황공시)를 문서참조 삽입 기능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 1. 참조 박스의 내용 전체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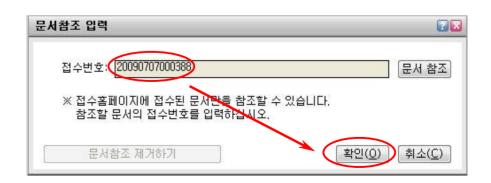
2. [삽입] / [문서참조 삽입] 메뉴를 클릭한다.



3. [문서참조 입력] 창에서 문서참조버튼을 눌러 [문서참조] 창을 띄운 후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를 실행하여 접수 번호를 검색하여 입력하거나 직접 접수번호를 입력한다.



4. 접수번호가 입력되면 확인버튼을 눌러 연결을 완료한다.



8 수탁기관의 업무

- ◆ 수탁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전자공시시스템을 운영하며 문서의 수신 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O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가 제출한 공시사항을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O 공시사항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음

- ◈ 공시대상회사가 공시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3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O 공정거래법 제37조에 근거하여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 내용의 정정' 등 시정명령 부과
- O 공정거래법 제130조 및 시행령 제94조 별표9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참고> 시행령 별표9 공시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71511 7 7 01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 과태료금액 (단위: 만원)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1,000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시하 경으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500	
이시한 정구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1,000	

◇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별 최종 체크리스트

공시항목	공시내용	확인
	① 회사개요	
	[H] 영위업종 현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	
	② 회사 재무현황(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유동자산·비유동자산 등이 감사	
일반현황	보고서의 재무상태표 수치와 일치하는지 여부 ③ 회사 손익현황(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글반연청 (연1회)	- 당기순이익, 매출액 등이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	
	수치와 일치하는지 여부	
	④ 국외 계열회사 현황	
	- 누락된 국외계열사가 없는지 여부	
	⑤ 계열회사 변동 현황	
	- 국내계열회사 및 국외계열회사의 편입, 제외 확인	
	⑥ 임원현황	
임원,	- 금년도 지정일 기준 임원현황이 제대로 공시되어 있는지 여부 ⑦ 이사회, 위원회, 주주총회 관련제도, 소수주주권 등의	
이사회 등의	(f) 이사와, 기천와, 구구공의 선턴제도, 조구구구천 등의 운영현황	
운영현황		
(연1회)	는지 여부 -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등이 정관에 따라 제대로 공시	
	되어 있는지 여부	
주식소유	⑧ 소유지분현황	
	- 주주현황의 동일인관련자 구분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여부	
현황 (연1회)	⑨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 자기주식의 주식수, 지분율, 장부금액을 제대로 공시하였는지 여부	
순환출자 현황 (연1회 및 분기)	⑩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현황(연1회)	
	- 누락된 순환출자고리가 없는지 여부	
	①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분기)	
	- 직전분기동안 순환출자에 포함된 자기회사의 출자내역이 변동되었는지 여부	
	①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계열회사 현황	
현황 (연1회)	-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 및 동 일인 관련자의 주식소유현황	

공시항목	공시내용	확인
금융보험사 의결권현황 (분기)	① 금융·보험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현황	
	-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및 법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⑭⑮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현황(연1회)	
	- 해당분기동안의 자금차입(계열회사 등) 및 자금대여(특수관계인)가 있었는지 여부	
	16①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 간 유가증권거래 현황(연1회)	
	- 해당분기동안 유가증권을 매도(계열회사, 특수관계인) 및 매입(특수관계인)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	
	-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역	
	®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연1회)	
	- 계열회사와의 거래현황을 공시	
	- 국내계열사 매출액(분기, 연간), 국외계열사 매출액, 매출액총계 (계, 국내매출액, 국외매출액)의 합계가 맞는지 여부	
	⑩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분기/연1회)	
계열회사와	- 해당분기(상장사) 및 사업연도(비상장사)동안 계열회사와의 거 래금액이 50억원 이상, 분기(상장사)·연(비상장사) 매출액의 5% 이상인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투수관계인 간거래현황	② 계열회사간 물류·IT서비스 거래 현황(연1회)	
(연1회 및 분기)	- 직전연도 동안 계열회사와의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이 50억 원 (상장사는 200억 원)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인지 여부	
ĺ	②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연1회)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계에 속해 있는지, 직전 사업연도	
	동안 지주회사간 경영관리·자문용역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②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연1회)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계에 속해 있는지, 직전 사업연도	
	동안 지주회사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② 계열회사간 기타자산거래 현황(연1회) - 사업연도 동안 국내 계열회사에게 기타자산을 매도한	
	- 사업선도 중안 국내 계월회사에게 기타자산을 배도만 내역이 있는지 여부	
	②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연1회)	
	- 사업연도 동안 국내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유상, 무상 모두 포함) 실적이 있었는지 여부	

공시항목	공시내용	확인
계열회시와 특수관계인 간거래현황 (연1회 및 분기)	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자산거래 현황(연1회)	
	- 사업연도 동안 특수관계인에게 기타자산을 매도 및 매입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	
	26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잔액 현황(연1회)	
	-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잔액 확인	
	②② 계열회사간 채무보증(분기) 및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연1회) 현황	
	- 직전분기 말 기준 존재하는 채무보증(제한대상, 제한제외대상 등) 및 직전 사업연도 말 담보제공 내역이 있는지 여부	
	②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연1회)	
	- 지분율이 공시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직전 사업연도 동안 상품·용역, 자금, 자산거래 등이 있는지 여부	
	③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연1회)	
	- 공시 대상 여부 및 공시 기준일 동안 상품·용역, 자금, 자산거래 등이 있는지 여부	